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현안분석**

21세기를 대비한 OECD의 세제개혁

환경세 도입과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등소평 사후의 한·중 경제협력

● **정책연구**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 외

● **정책토론포트**

한·EU 주세협약의 대비 주세제도 개편방향

● **정책흐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외

●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관련 통계(I)

C O N T E N T S

권두칼럼

| | | |
|---|--------------------|------|
| 2 | 한보그룹의 부도와 재벌의 차기혁신 | /김진수 |
|---|--------------------|------|

현안분석

| | | |
|----|------------------------------------|------|
| 6 | 21세기를 대비한 OECD의 세제개혁 | /박정수 |
| 26 | 환경세 도입과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 OECD에서의 최근 논의 | /최준욱 |
| 52 | 등소평 사후의 한·중 경제협력 | /한상국 |

정책토론포트

| | | |
|----|-------------------------|------|
| 72 | 한·EU 주세협 의 대비 주세제도 개편방향 | /성명재 |
|----|-------------------------|------|

정책연구

| | | |
|----|---------------------|------|
| 80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과 정책과제 | /홍범교 |
| 84 | 조세정책과 외국자본 유입의 형태 | /전주성 |
| 88 |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 | /전영준 |

정책흐름

| | |
|-----|-----------------------------|
| 93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
| 99 |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
| 105 |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 실시 |
| 108 |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추진상황 및 주요내용 |

재정통계

| | |
|-----|----------------|
| 114 | 특별소비세 관련 통계(1) |
|-----|----------------|

한보그룹의 부도와 재벌의 자기혁신

김진수/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보그룹의 부도사태는 우리 정치·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위기감에 빠지게 하였다. 한보사태는 정치권, 재계, 금융계가 관련된 전형적인 정경유착형 대형 금융비리사건이었으며, 노동법파문, 삼미그룹의 부도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난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개발독재시대에는 있음직한 일이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어서고 OECD 회원국이 된 현 상황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 정치·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원인과 대책은 여러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치고비용구조가 이번 사태를 유발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필요하며, 정치자금은 상당부분 재벌로부터 흘러 들어오고, 재벌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하며, 은행은 정치와 관권으로부터 은행장의 인사와 경영에 대한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종 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정치고비용구조를 타파해야 할 것이며 또한 비현실적인 현행 정치자금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도 이번 사태를 유발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업종 전문화시책에 의해 한보철강은 주력기업으로 선정되어 각종 혜택

을 받았다.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특혜 제공의 소지가 많은 업종전문화시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정부는 특정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간여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위해 정부규제를 완화 내지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은행경영의 비자율성도

이번 사태를 유발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은행장의 인사에 정치와 관권이 개입하는 상황에서 정경유착 형태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은행장의 인사에 정치와 관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대출 등 여신행위는 물론 모든 은행경영이 완전히 은행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은행이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물경제와의 연계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보그룹 부도의 근본적인 책임은 위의 세 요인보다 부도덕한 최고경영자에 있다. 정태수 총회장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이 아닌 개인적 의지와 감에만 의존하여 엄청난 규모의 위험한 투자를 강행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마구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로비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돈이었다는 사실에서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대단한 것이었다. 재벌은 한보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한보사태를 계기로 재벌은 국민으로부터 받아 온 불신을 깨끗이 씻고 거듭나야 할 것이다. 재벌이 지금까지 정치와 관권에 유착하여 성장해 왔더라도 향후 소득분배의 왜곡과 비효율적인 경영을 불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재벌에 대한 차가운 비판은 따뜻한 애정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자기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재벌의 최고경영자는 올바른 경영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재벌의 최고경영자는 재벌의 성장비결이 정부의 특혜적 지원에 힘입은 바 컸다는 사실과 그와 같은 지원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대가로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정치와 관권을 이용하여 특혜적 지원을 받아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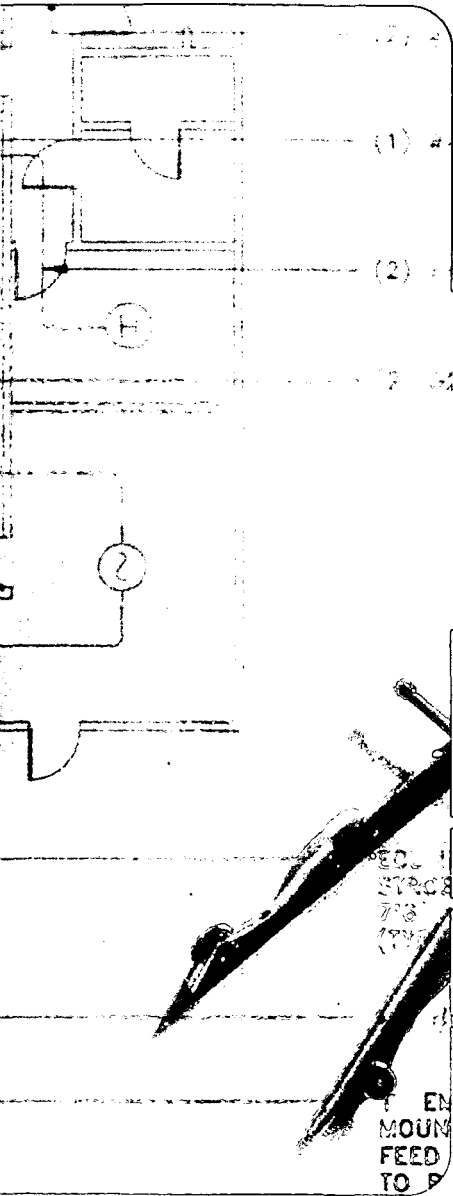
둘째, 재벌의 소유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구조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대주주 1인의 지분이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지분이 높아 많은 계열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유구조는 소수의 재벌 대주주가 우리 경제를 과도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하며 분배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재벌의 소유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분산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재벌 계열기업의 공개를 촉진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정부분을 종업원 지주로 이전시키며, 환상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지분을 밀접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계열회사의 지분소유로 정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재벌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재무구조의 문제점은 차입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하면 경기침체나 수출시장 또는 금융여건이 어려워질 때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업경영이 부실화된다.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차

입증대를 통한 투자확대를 지양하고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려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넷째, 이사회제도와 감사제도 등 재벌의 내부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회제도의 문제점은 이사회가 내부 경영자들로 구성됨으로써 감시기구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외부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감독이사회를 만들어 경영이사회와 함께 이사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감사가 주주들을 대신하여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또는 기관투자가 대표, 전직임원 또는 관련기관 임직원, 공인회계사,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유능한 자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보사태를 계기로 재벌은 국민으로부터 받아 온 불신을 자기혁신을 통해 깨끗이 씻고 거듭나야 할 것이다. 재벌이 과거 경제개발과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와 관권에 유착하여 성장해 왔더라도 향후 소득분배의 왜곡과 비효율적인 경영을 불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재벌에 대한 차가운 비판은 따뜻한 애정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KDI



현안분석

21세기를 대비한 OECD의 세계개혁 / 박정수

환경세 도입과 환경친화적 세계개편 / 최준욱
- OECD에서의 최근 논의

등소평 사후의 한·중 경제협력 / 한상국

21세기를 대비한 OECD의 세제개혁

박 정 수/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문제의 제기

1980년대 이후 OECD국가들이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1990년대 후반기의 조세체계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복잡한 현행 조세체계는 납세자나 과세당국 모두 이해하기 어려워 정부의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정교한 조세회피수단(tax loophole)의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층 더 정교화하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더욱 세분화된 법규가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조세체계는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최근 영국의 전체적인 조세행정 및 납세협력비용은 GDP의 1.5%로 추정되며 이 중 3분의 2가 납세협력비용으로 보고되고 있다¹⁾. 이는 농림수산업의 비중과 비슷한 규모로 조세산업(tax industry)의 효율화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세법의 분량으로 간접측정이 가능하다. 1954년 이래로 지난 40년간 미국의 내국세입법은 두 배로 늘어났고, 캐나다는 1971년과 1994년 사이에 세 배로 늘어났으며, 유사기간 동안 네덜란드도 두 배로 늘어났다. 단지 프랑스만이 30년 전과 비교하여 거의 비

1) Sandford, Cedric, *Tax Compliance Costs: Measurement and Policy*, London: Fiscal Publications, 1995.

* 본고는 Jeffrey Owens and Edward Whitehouse, "Tax Reform for the 21st Century," *Bulletin*, IBFD, Nov/Dec. 1996을 필자가 요약·정리·보완한 것이다.

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²⁾.

최근 OECD국가들은 세계개혁을 통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호주는 1993년에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에 걸친 세법개정(tax law improvement program) 작업에 착수하여 법규를 보다 명료하게 개정하여 조세법규의 분량을 기존의 50%로 축소하였다. 뉴질랜드와 영국에서도 소득세제를 개편하려는 유사한 개혁이 시작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1967년 이후 최초로 세법통합을 위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단일세율체계(flat tax) 도입논의도 이러한 조류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해진 세법이 가져올 편익이 개혁의 집행비용과 기존 법에 대한 익숙함의 손실(적응비용)을 능가하는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세계개혁의 방향을 조망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 OECD국가들의 조세체계 변천의 특징을 사항별로 정리하고 이의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세체계 변화의 특징

1. 조세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의 가중을 해소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GDP의 34%에서 1990년 37%, 1994년 38.5%로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조세부담의 증가가 보편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국가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벨기에·체코·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45%를 초과하나 호주·일본·멕시코·터키·미국은 GDP의 3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근 Tanzi and Schuknecht(1996)³⁾는 이들 작은 정부형태의 국가군의 경쟁력이 큰 정부형태의 국가군보다 높다는 점을 보여 주면서 생산성과 정부의 크기간에 역비례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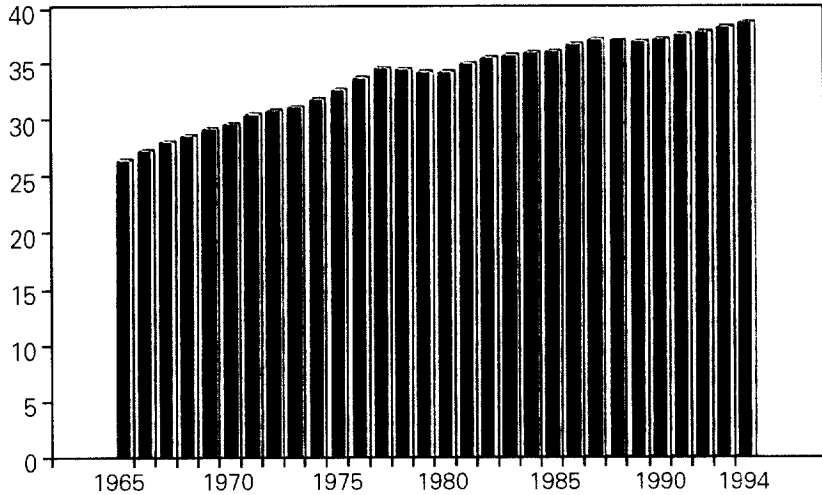
복잡한 조세체계는 징수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증대시키고 보다 정교한 조세회피수단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

2) Tax Law Review Committee, *Interim Report on Tax Legislation*, Londo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1996.

3) Tanzi, Vito and Ludger Schuknecht, "Reforming Government in Industrial Countries," *Finance and Development*, September 1996.

개인소득세 최고한계
세율의 급격한 상승은
저축과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왜곡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수단 활용의 동기를
제공한다.

(그림 1) OECD국가들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1965~1994)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96.

2.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개인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의 급격한 상승은 저축과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왜곡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조세회피수단 활용의 동기를 제공하여 실제로는 한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더 높은 세율이 더 많은 조세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터키를 제외한 20개국은 최고한계세율을 최근 10년간 평균 10% 포인트 정도 인하하였다. 이러한 한계세율의 인하는 주로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고 1990년대에는 안정적인 추이를 시현하고 있다.

3. 소득세 과세표준의 확대

각국은 과세표준을 확대함으로써 최고한계세율의 인하로 인한 세수입의 부족을 보전하였다. 호주·핀란드·뉴질랜드·영국 등에서는 부대혜택(fringe benefits)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확대했으며, 핀란드·아일랜드·영국 등에서는 주택대부이자상환(mortgage interest payments)에 대한 감면을 축소했

〈표 1〉 중앙정부 개인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의 변화추이

(단위 : %)

| | 1986 | 1990 | 1995 |
|-------|------|------|-------|
| 호주 | 57 | 47 | 47 |
| 오스트리아 | 62 | 50 | 50 |
| 벨기에 | 72 | 55 | 55 |
| 캐나다 | 34 | 29 | 31.3 |
| 덴마크 | 45 | 40 | 34.5 |
| 핀란드 | 51 | 43 | 39 |
| 프랑스 | 65 | 57 | 56.8 |
| 독일 | 56 | 53 | 53 |
| 그리스 | 63 | 50 | 40 |
| 아이슬란드 | 38.5 | 33 | 38.15 |
| 아일랜드 | 58 | 53 | 48 |
| 이탈리아 | 62 | 50 | 51 |
| 일본 | 70 | 50 | 50 |
| 룩셈부르크 | 57 | 56 | 50 |
| 네덜란드 | 72 | 60 | 60 |
| 뉴질랜드 | 57 | 33 | 33 |
| 노르웨이 | 40 | 20 | 13.7 |
| 포르투갈 | 61 | 40 | 40 |
| 스페인 | 66 | 56 | 56 |
| 스웨덴 | 50 | 20 | 25 |
| 스위스 | 13 | 13 | 11.5 |
| 터키 | 50 | 50 | 55 |
| 영국 | 60 | 40 | 40 |
| 미국 | 50 | 28 | 39.6 |

조세감면은 정부의 직접지출 혹은 규제조치에 비하여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집단의 기득권 고수 노력으로 한시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주: 캐나다·핀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미국에서는 주·지방정부 수준에서도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자료: OECD, Tax Database.

고, 미국도 1986년 세계개혁에서 감면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소비,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조세체계의

OECD국가들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율구간의 수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율체계를 재조정하였다.

복잡성을 증대시키는 등, 정부의 직접지출 혹은 규제조치에 비하여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집단의 기득권 고수 노력으로 한시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벨기에·핀란드·프랑스·네덜란드·아일랜드·이탈리아·포르투갈 등은 1980년대를 통해 조세지출예산제도 (tax expenditure accounts)를 도입했고 조세지출로 일실한 조세수입의 규모를 추정하는 보고서가 14개 OECD국가에서 작성되었다. 최고세율의 인하와 함께 감면축소 등 과세표준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으며 OECD국가들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1980년의 GDP의 11.3%와 비교하여 1994년에는 평균 10.7% 수준으로 나타났다.

4. 세율구간의 축소(A Flatter Income Tax)

OECD국가들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율구간 (brackets)의 수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율체계를 재조정하였다. 보다 작은 수의 한계세율이 반드시 누진도가 완화된 소득세체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조세체계가 단순해지는 효과는 분명하다. 1980년대 후반에 10개 이상이었던 세율구간의 수가 최근 6개 미만으로 줄었다. 1990년대에는 프랑스·그리스·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의 국가가 그들의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였으나 아이슬란드·영국·미국은 오히려 이전보다 복잡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표 2〉 참조).

5. 조세구조의 변화

개인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소비세 (general consumption tax)로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조세구조의 변화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많은 나라들에서 논의되었다. 소비세로의 전환은 저축에 있어 세전·세후 수익률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저축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키고 조세회피를 곤란하게 하며 순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동기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납세자들이 주어진 임금하에서

〈표 2〉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의 수 변화추이

| | 1986 | 1990 | 1995 |
|-------|------|------|------|
| 호주 | 5 | 4 | 4 |
| 오스트리아 | 10 | 5 | 5 |
| 벨기에 | 12 | 7 | 7 |
| 캐나다 | 10 | 3 | 4 |
| 덴마크 | 3 | 3 | 4 |
| 핀란드 | 11 | 6 | 6 |
| 프랑스 | 12 | 12 | 6 |
| 그리스 | 18 | 9 | 3 |
| 아이슬란드 | 3 | 1 | 2 |
| 아일랜드 | 3 | 3 | 2 |
| 이탈리아 | 9 | 7 | 7 |
| 일본 | 15 | 5 | 5 |
| 룩셈부르크 | 21 | 24 | 17 |
| 네덜란드 | 9 | 3 | 3 |
| 뉴질랜드 | 6 | 2 | 2 |
| 노르웨이 | 8 | 2 | 2 |
| 스페인 | 34 | 16 | 16 |
| 스웨덴 | 10 | 1 | 1 |
| 스위스 | 6 | 6 | 13 |
| 터키 | 6 | 6 | 7 |
| 영국 | 6 | 2 | 3 |
| 미국 | 14 | 2 | 5 |

일반소비세로의 이전을 통한 조세구조 개혁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축보다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대체로 이루어졌다.

자료: OECD, Tax Database.

높은 소비세율이 소비여력을 줄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근로동기에 대한 효과는 소득세부과와 동일할 것이다. 게다가 일반소비세는 보통 저소득자들에게 보다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개인소득세보다 역진적이며 호주·캐나다·일본에서는 소비세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저항이 상당했다. 또한 어떤 재화가 비과세되거나 저율과세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킨다. 〈표 3〉을 통해 일반소비세로의 이전이 개인소득

일반소비세 수입의 증가는 주로 도·소매 매상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만 하면 세율이 인상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와 법인세의 감축보다는 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대체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 OECD국가들의 조세체계변화(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 | 1965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4 |
|---------|------|------|------|------|------|------|------|
| 개인소득세 | 26 | 28 | 31 | 32 | 30 | 30 | 28 |
| 법인소득세 | 9 | 9 | 8 | 7 | 8 | 8 | 8 |
| 사회보장기여금 | 19 | 21 | 25 | 25 | 25 | 25 | 27 |
| 재산세 | 8 | 7 | 6 | 5 | 5 | 5 | 5 |
| 일반소비세 | 12 | 13 | 13 | 14 | 16 | 17 | 18 |
| 개별소비세 | 24 | 22 | 17 | 17 | 16 | 15 | 14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96.

6. 부가가치세의 확산

부가가치세의 확산이 매우 두드러져 현재 OECD국가 중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뿐이다. 일반소비세 수입의 증가는 주로 도·소매 매상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은 EU에 가입한 1980년대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고(가입조건) 캐나다·아이슬란드·일본·뉴질랜드·스위스 등은 최근에 도입하였다. 일반소비세의 비중증대는 일단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만 하면 세율이 인상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초 도입시에는 표준세율의 평균이 12.5%였으나 현재는 평균 17.5% 수준에 이른다(〈표 4〉 참조).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확대

모든 국가들이 금융·부동산임대·의료·교육·자산·도박 등의 많은 서비스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서적·신문·교통·식품과 같은 재화와 용역에는 보다 낮은 세율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표 4〉 OECD국가들의 부가가치세제

(단위 : %)

| |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 도입초기 표준세율 | 현재 표준세율 |
|-------|------------|-----------|---------|
| 오스트리아 | 1973 | 16 | 20 |
| 벨기에 | 1971 | 18 | 21 |
| 캐나다 | 1991 | 7 | 7 |
| 덴마크 | 1967 | 10 | 25 |
| 핀란드 | 1969 | 11.1 | 22 |
| 프랑스 | 1964 | 20 | 20.6 |
| 독일 | 1968 | 10 | 15 |
| 그리스 | 1987 | 16 | 18 |
| 아이슬란드 | 1989 | 22 | 24.5 |
| 아일랜드 | 1972 | 16.4 | 21 |
| 이탈리아 | 1973 | 12 | 19 |
| 일본 | 1989 | 3 | 5 |
| 룩셈부르크 | 1970 | 8 | 15 |
| 멕시코 | 1960 | 10 | 15 |
| 네덜란드 | 1969 | 12 | 17.5 |
| 뉴질랜드 | 1986 | 10 | 12.5 |
| 노르웨이 | 1970 | 20 | 23 |
| 포르투갈 | 1986 | 16 | 17 |
| 스페인 | 1986 | 12 | 16 |
| 스웨덴 | 1969 | 11.1 | 25 |
| 스위스 | 1995 | 6.5 | 6.5 |
| 터키 | 1985 | 10 | 15 |
| 영국 | 1973 | 10 | 17.5 |

일부 국가들에서는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지출행태의 왜곡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5.

국가들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지출행태의 왜곡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일본은 표준세율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의 부가가치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벨기에·아일랜드·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은 비교적 세수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범위에 따른 차이로 분석된다(〈표 5〉 참조).

뉴질랜드와 일본은
비교적 큰 규모의
부가가치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벨기에·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세수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부가가치세율, 표준세율 및 과세표준 추정(1993)

(단위 : %)

| | 표준세율 | 부가가치세율 비중 (GDP 대비) | 과세표준 (평균=100) |
|-------|------|-----------------------|------------------|
| 오스트리아 | 20 | 8.3 | 102 |
| 벨기에 | 20.5 | 7.0 | 84 |
| 캐나다 | 7 | 2.6 | 90 |
| 덴마크 | 25 | 9.8 | 96 |
| 핀란드 | 22 | 8.6 | 96 |
| 프랑스 | 18.6 | 7.5 | 99 |
| 독일 | 15 | 6.8 | 111 |
| 그리스 | 18 | 8.5 | 116 |
| 아이슬란드 | 24.5 | 9.9 | 99 |
| 아일랜드 | 21 | 7.0 | 82 |
| 이탈리아 | 19 | 5.6 | 72 |
| 일본 | 3 | 1.5 | 123 |
| 룩셈부르크 | 15 | 6.7 | 110 |
| 네덜란드 | 17.5 | 7.0 | 98 |
| 뉴질랜드 | 12.5 | 8.2 | 161 |
| 노르웨이 | 22 | 9.1 | 102 |
| 포르투갈 | 16 | 6.2 | 95 |
| 스페인 | 15 | 5.1 | 83 |
| 스웨덴 | 25 | 8.5 | 83 |
| 스위스 | 6.5 | 2.7 | 102 |
| 터키 | 15 | 5.7 | 93 |
| 영국 | 17.5 | 6.6 | 93 |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5.
 _____, *Revenue Statistics*, 1996.

〈표 6〉 중앙정부 법인세의 표준세율(1986~1995)

(단위 : %)

| | 1986 | 1991 | 1995 |
|-------|-------|-------|-------|
| 호주 | 49 | 39 | 33 |
| 오스트리아 | 30 | 30 | 34 |
| 벨기에 | 45 | 39 | 39 |
| 캐나다 | 36 | 29 | 29 |
| 덴마크 | 50 | 38 | 34 |
| 핀란드 | 33 | 23 | 25 |
| 프랑스 | 45 | 34/42 | 33 |
| 독일 | 56 | 50/36 | 45/30 |
| 그리스 | 49 | 46 | 35/40 |
| 아이슬란드 | 51 | 45 | 33 |
| 아일랜드 | 50 | 43 | 40 |
| 이탈리아 | 36 | 36 | 36 |
| 일본 | 43 | 38 | 38 |
| 룩셈부르크 | 40 | 33 | 33 |
| 네덜란드 | 42 | 35 | 35 |
| 뉴질랜드 | 45 | 33 | 33 |
| 노르웨이 | 28 | 27 | 19 |
| 포르투갈 | 42/47 | 36 | 36 |
| 스페인 | 35 | 35 | 35 |
| 스웨덴 | 52 | 30 | 28 |
| 스위스 | 4-10 | 4-10 | 4-10 |
| 터키 | 46 | 49 | 25 |
| 영국 | 35 | 34 | 33 |
| 미국 | 46 | 34 | 35 |

많은 국가에서
특정지역·특정부문을
위한 유인제도, 투자
세액공제제도, 재산관련
조세감면 등의 유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있다.

주: 오스트리아·캐나다·핀란드·독일·이탈리아·일본·노르웨이·포르투갈·스위스·미국은 주·지방정부 수준에서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

자료: OECD,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1991.
_____, Tax Database.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추세는 높은 수준의 실업률, 노령인구의 증가, 부양자녀 없는 노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8.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

사회보장기여금도 증가추세에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994년에는 개인소득세 수입 정도로 규모가 증대되었으며 OECD국가 중 16개국에서는 소득세 수입보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높은 수준의 실업률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압력, 노령인구의 증가, 부양자녀 없는 노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핀란드·프랑스·그리스·노르웨이·포르투갈 등에서는 지출이 크게 늘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기여금각출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9. 개인소득세의 추세를 따르는 법인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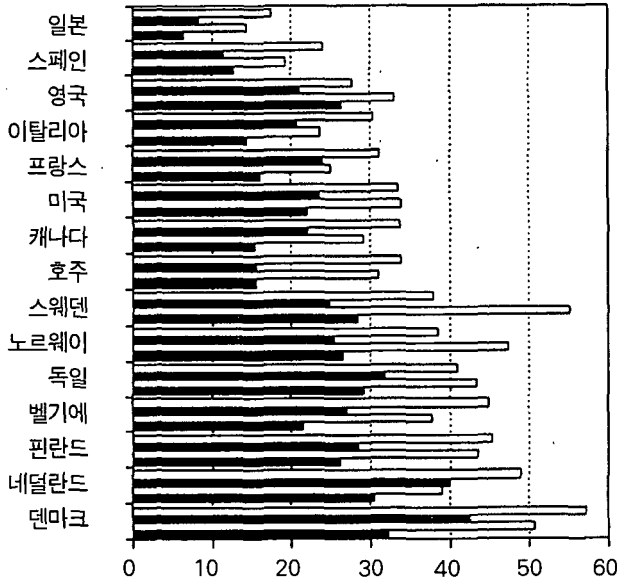
법인세도 개인소득세를 따라 과세표준은 확대되고 세율은 축소되고 있다. 특정지역이나 특정부문을 위한 유인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 그리고 재산관련 조세감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인제도들이 호주·오스트리아·핀란드·아이슬란드·포르투갈·스페인·미국 등의 국가에서 제한되거나 폐지되었다. 그리고 조세목적을 위한 감가상각도 경제적인 감가상각(기업회계 기준)에 좀더 가까이 접근되었다. <표 6>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 법인세 기본세율이 평균적으로 10% 포인트 낮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Ⅲ. 21세기를 대비한 기존 조세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과제

1. 소득분배

[그림 2]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세계개혁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잘 나타나 있다. 1978년과 1992년을 비교하여 보면 캐나다·덴마크·네덜란드·프랑스에서 저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노르웨이·스웨덴에서는 모든 그룹의 조세부담이 하락했으나 저소득계층의 하락폭이 고소득계층의 하락폭보다 작았으며 미국·독일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은 증가했으나 고소득층의 경우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OECD

(그림 2) 총소득 대비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분포(1978~1992)



북미와 영국은 북유럽보다 조세부과전 소득분포의 격차가 커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의하여 부담되는 조세비중이 작다.

주: 독신자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67%에 해당되는 세부담을 검은 막대로, 200%의 세부담 수준을 흰 막대로 나타내었으며 나라별로 상단에는 1992년의 부담분포를, 하단에는 1978년의 분포를 표시하여 비교하였음.

자료: OECD, *The OECD Jobs Study: Taxati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1995.

(표 7) 소득 5분위계층별 조세부담분포

(단위 : %)

| | 1 | 2 | 3 | 4 | 5 |
|------|------|------|------|------|------|
| 호주 | 0.7 | 7.6 | 16.3 | 24.2 | 51.2 |
| 캐나다 | 3.6 | 8.8 | 16.2 | 24.8 | 46.5 |
| 핀란드 | 4.9 | 11.2 | 17.1 | 23.9 | 42.9 |
| 독일 | 5.5 | 10.4 | 17.0 | 23.4 | 43.7 |
| 아일랜드 | 7.0 | 12.2 | 17.6 | 23.8 | 39.3 |
| 네덜란드 | 10.3 | 10.0 | 16.2 | 22.3 | 41.2 |
| 노르웨이 | 3.7 | 13.2 | 19.2 | 25.7 | 38.1 |
| 스웨덴 | 6.3 | 12.5 | 17.7 | 23.3 | 40.1 |
| 영국 | 4.5 | 8.1 | 15.9 | 25.0 | 46.4 |
| 미국 | 3.8 | 6.9 | 13.9 | 22.6 | 52.7 |

자료: OECD, *The OECD Jobs Study: Taxati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1995.

환경세는 공해를 줄이는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며, 재정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조세수입을 발생시키는 장점이 있다.

국가들 사이에서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확대되고 있으며 조세구조의 누진도가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호주와 미국에서는 가장 가난한 60%의 인구가 전체 조세의 약 4분의 1을 부담하고 캐나다·영국에서는 28.5%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아일랜드·노르웨이·네덜란드·스웨덴은 약 36%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낸다(〈표 7〉 참조). 이러한 차이는 조세부과전 소득분포에 기인한다. 북미와 영국에 있어 조세부과전의 소득분포는 북유럽의 상대적으로 균등한 분배보다 격차가 커서 두 국가 그룹간의 조세체계가 유사하게 누진적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의하여 부담되는 조세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2. 환경문제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자동차 매연 및 먼지, 산성비 등의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면서 1980년대 후반 환경문제가 중요한 관심거리로 등장하였다. 환경세는 행정규제 이상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해를 줄이는 시장유인제도이다. 또한 환경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하도록 지속적인 유인을 제공하며, 규제와 달리 재정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조세수입을 발생시켜 다른 부문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환경세 개혁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으며 OECD 정부들은 오염물질에 직접적인 환경세를 부과하기보다 규제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8〉에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의 1994년 환경세수입을 나타냈으나 전체 조세수입의 1% 미만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19개국에서 무연휘발유에 대한 휘발유세의 역차별, 촉매장치의 부착 혹은 연료효율적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역차별 등 기존세제의 차별화가 활용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유연휘발유의 사용금지와 같은 행정규제가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이들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만 과세표준이 환경오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한 환경세는 아니다. 상당한 조세수입 잠재성을 가진 유일한 환경세는 탄소세이나 국내산업 경쟁력의 약화라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3. 저축문제

가계저축과 관련해서는 높은 저축률이 투자를 촉진하고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논의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OECD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수준이 가계저축 수준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고 조세유인이 가계저축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되더라도 국민 저축 증대효과가 미미하며 유인책으로 발생하는 정부조세수입의 손실이 공공 저축을 감소시켜 가계저축의 증가를 상쇄할 수 있다.”

저축유형간의 배분문제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축유형에 따른 세부담이 상이하므로 기대수익률과 위험도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저축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우대혜택 여부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다 우월한 저축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문제는 경제적 특성이 아니라 조세조치에 따라 저축수단(savings vehicles)이 선택되므로 시장이 왜곡되고 투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저축과 관련하여 소비세(expenditure tax)는 현재와 미래의 소비(저축)에 대해 모두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므로 중립적인 데 반해 포괄적 소득세(comprehensive income tax)는 현재소비보다 미래소비를 증과함으로써 미래소비에 대하여 차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림 3]을 통해 연금·주택·주식·은행예금의 4가지 저축수단에 대한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을 비교해 보면 캐나다·프랑스·영국·미국 4개국에서는 연금이 가장 관대하고 다음이 주택, 주식, 은행예금 순이며, 독일에서는 연금이 소비세적인 조치를 받아 한계실효세율이 영(0)이고 주택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각각의 저축수단에 대한 조세부과조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최근 일부 국가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자본소득을 단일세율로 비례과세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전환하였고, 핀란드에서는 25%의 분리단일세율 체계(separate flat tax)를 자본소득에 도입하였으며, 저축성 예금에 대한 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축유형에 따른 세부담이 상이하므로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세금우대혜택 여부에 따라 저축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4) OECD, *Taxation and Household Saving*,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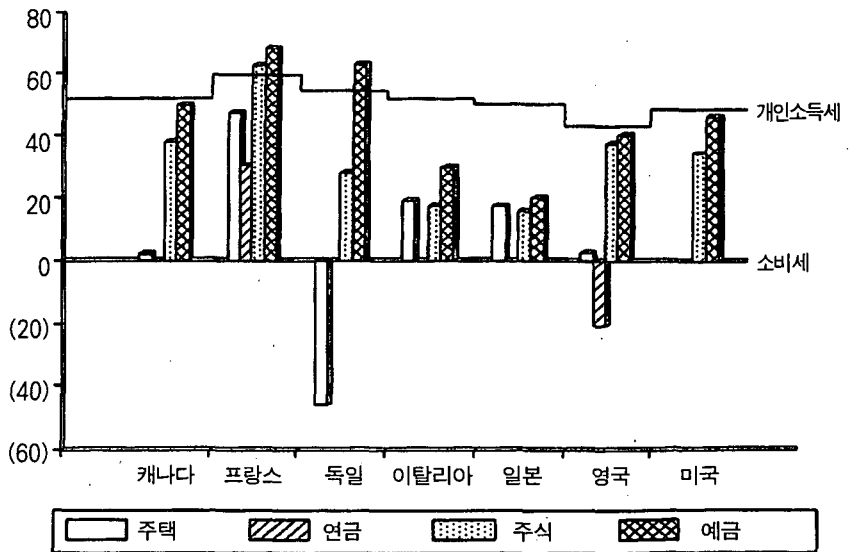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저축
상품을 도입하거나
자본소득에 대해 단일
과세하여 보다 중립적인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환경관련 조세수입 비중(1994)

(단위 : %)

| | 환경세수입 (총세입 대비) |
|-----------------|-------------------|
| 덴마크 | |
| CFC | 0.001 |
| CO ² | 0.658 |
| 건전지 | 0.002 |
| 일회용품 | 0.011 |
| 살충제 | 0.002 |
| 폐기물 | 0.119 |
| 총계 | 0.809 |
| 네덜란드 | |
| 대기오염 | 0.430 |
| 수질오염 | 0.007 |
| 총계 | 0.437 |
| 노르웨이 | |
| CO ² | 0.714 |

(그림 3) 저축수단별 실효세율(1994)



자료: OECD, Taxation and Household Saving, 1994.

면제도는 폐지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이자, 귀속소득(imputed income from owner-occupation), 배당 등을 28%의 단일세율로 부과되게 되었다.

최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다양한 세율로 여러 저축수단에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향후 일정한도내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저축상품을 도입하거나 자본소득에 대해 단일 과세하여 보다 중립적인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4. 투자문제

최근의 법인세개혁으로도 기업의 투자에 대한 비유인적 요소(disincentives)와 투자자금의 조달방식 및 투자형태에 대한 왜곡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표 9>를 통해 투자에 대한 조세효과를 측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인 한계실효조세부담(marginal effective tax wedges)을 살펴보면 단연 차입이 가장 조세 효율적인 금융형태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독일에 있어서 차입을 통하는 경우 요구되는 수익률은, 명목이자지불의 손금산입으로 주식발행에 의하는 경우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최근의
법인세개혁으로도
기업의 투자에 대한
비유인적 요소와 투자
자금의 조달방식 및
투자형태에 대한
왜곡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표 9> 재원조달방식 및 자산별 한계실효조세부담

| | 건물 | 공장 및 기계 | 재고 | 유보이익 | 신주발행 | 차입 | 평균 |
|------|-----|---------|-----|------|------|------|-----|
| 프랑스 | 1.2 | -0.5 | 3.5 | 3.7 | -4.0 | -2.2 | 0.8 |
| 독일 | 2.4 | 0.5 | 4.5 | 7.0 | -3.1 | -4.6 | 1.9 |
| 네덜란드 | 1.8 | 0.4 | 2.3 | 4.0 | -0.7 | -2.5 | 1.2 |
| 영국 | 2.0 | 0.6 | 3.9 | 4.2 | 0.5 | -1.8 | 1.7 |
| 미국 | 4.4 | 0.9 | 3.8 | 5.4 | 5.4 | -2.9 | 2.5 |
| 평균 | 2.4 | 0.4 | 3.6 | 4.9 | -0.4 | -2.8 | 1.5 |

주: 한계실효조세부담(marginal effective tax wedge)은 세전과 세후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냄. 예를 들어 10%의 세후 목표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한계실효세부담 1.2%는 세전수익률이 11.2%가 되어야 함을 의미함. 자산별 가중치는 건물 28%, 공장 및 기계 50%, 재고 22%로 계산하고 재원조달방식별 가중치는 유보이익 55%, 신주발행 10%, 차입 35%로 계산하며 경제적 감가상각률은 건물 3.6%, 공장 12.25%, 재고 0%로, 물가상승률은 3.5%로 계산함.

· 자료: Griffith, R., "A Note on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the Czech Republic and Poland," *Fiscal Studies*, Vol. 17, No. 3, 1996, pp. 91~103.

조세와 부조체계는
실업합정, 빈곤합정
등의 형태로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소위 고전적 법인세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보이익(retained earning)과 신주발행에 대한 조세부담(tax wedge)이 동일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과세조정 방법 중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귀속법(imputation system)이, 독일에서는 배당과 유보이익이 다른 세율로 부과되는 분리세율체계(split-rate system)가 활용되고 있다.

<표 9>의 마지막 열을 보면 평균적으로 각국에는 기업 투자에 대하여 자본비용의 약 1.5%에 해당하는 부담(disincentive)이 존재하며 조세로 인한 투자의 편익(biases)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자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향후 이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 실업문제

저소득자, 특히 돌볼 자녀가 있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노동정책은 상충되기 쉽다. 조세와 부조체계(benefit system)는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첫째, 실업수당이 노동소득에 비하여 높은 실업합정 문제가 있다. 실업수당의 삭감은 취업유인을 증대시키나 이러한 처방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하다. 둘째, 빈곤합정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에 투자할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유인이 거의 없다. 셋째, 근로소득세의 부과는 고용비용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경감은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도 비용이 크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경감은, 부족한 세수입이 여타 부분의 조세로 대체되거나 공공지출이 삭감되고 혹은 고소득자에게 조세부담이 재배분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보장기여금도 저임금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기여금의 한계설정(ceilings)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이 영(0)이나 저소득자에게는 양(positive)의 값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고용주는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기보다는 기존의 근로자로 하여금 초과근무하게 할 유인이 있다. <표 10>에는 각국의 사회보장기여금의 구조가 나타나 있다.

노동에 대한 유인으로 고용조건부 세액공제(employment-conditional tax credits)와 단기간의 근로수당(in-work benefits for short)이 활용된다. 이러한 유인제도는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혜택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대개 부양할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 한정하여 운영된다. 영국의 가족공제(Family Credit), 미국의 부의 소득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그리고 아일랜드의 가족소득보조(Family Income

노동에 대한 유인으로 고용조건부 세액공제와 단기간의 근로수당이 활용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혜택을 배제하는 제도이다.

〈표 10〉 사회보장기여금의 구조 (1993)

(단위 : %)

| | 최고한도(평균소득 대비) | |
|-------|---------------|-----|
| | 근로자 | 고용주 |
| 오스트리아 | 146 | 146 |
| 캐나다 | 105 | 105 |
| 프랑스 | 131 | 131 |
| 독일 | 169 | 169 |
| 그리스 | 212 | 212 |
| 아일랜드 | 154 | 164 |
| 룩셈부르크 | 245 | 245 |
| 스페인 | 219 | 219 |
| 터키 | 83 | - |
| 영국 | 154 | - |
| 미국 | 229 | 229 |

자료: OECD, *The Tax/Benefit Position of Production Workers*, 1995.

Supplement)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의 실증분석 결과 근로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가 최근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도 곧 확산될 전망이다.

새로운 통신기술의 6. 세계화

발달로 정주성,

원천성과 같은

전통적인 조세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지역블록화(EU, NAFTA)의 진전, 투자에 대한 제한의 철폐, 통신기술의 발달 등이 국가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화는 자본의 지리적인 이동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투자동기를 향상시켜 저축과 자본의 국제적 배분이 개선되고 효율화되는 효과를 유발한다. 과세표준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투자 및 금융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이 국가별 조세의 차이에 보다 민감해졌는데 이는 자본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표 3>과 <표 6>의 법인세 위상축소도 이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통합은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율 차이에 영향을 주어 덴마크와 캐나다는 주세와 담배세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EU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소세율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조세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은 이전의 기술진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거래를 개혁시키는 범세계적인 '초고속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를 창조하고 있다. 특정지역과 경제적 활동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기술변화에 따라 정주성(residency)과 원천성(source)과 같은 전통적인 조세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재정적 정주성은 물리적인 기업의 위치 및 효과적인 통제지역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되나 '초고속 정보고속도로'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영과 서비스의 통제는 이 개념으로 결정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과세당국은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난 활동의 이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과세당국이 언제 어디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장·신고제도 등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납세자의 비밀보호와 과세당국의 수요를 균형 있게 해결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Ⅳ. 결론 및 시사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걸친 OECD 회원국들의 조세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둘째, 법인세율의 전반적인 인하 셋째, 소득세 과세표준의 확대 넷째, 부가가치세의 국제적 확산 다섯째,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환경변화가 주요 동인이 되었다. 첫째, 세계화로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세율격차에 대한 부담이 커졌으며 이윤(profits)과 같이 과세표준을 식별하기 어려운 것보다 소비와 매출(earnings) 같이 식별이 용이한 조세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둘째, 조세징수기술의 발달로 세무공무원이나 대리인비용은 증가하는 데 비해 컴퓨터가 거래자료의 수집을 획기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조세의 자원배분 왜곡(fiscal distortion) 효과의 제거에 대한 요청과, 보다 중립적인 조세체계로의 전환수요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추세와 요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계개혁을 통해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다양한 저축의 양태에 대하여 보다 중립적인 조세체계로의 전환 둘째, 환경친화적인 세제를 도입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셋째, 세계개혁에 따른 소득분배의 영향에 대한 배려 넷째, 투자에 대해 보다 중립적인 조세체계로의 전환 다섯째, 실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조세의 영향에 대한 배려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세계개혁의 대상은 이와 유사하나 우리의 낮은 납세협력수준과 같은 조세환경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제의 정착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체계의 단순화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나 과소비와 같은 자원의 낭비와 경제성장의 저해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고려로서 프랭크(Robert Frank)가 주장하는 '승자전취사회'(winner-take-all society)⁵⁾에 대비한 특별소비세제(progressive consumption tax)의 정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DI**

우리나라의 낮은 납세협력수준과 같은 조세환경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제의 정착,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5) Frank, Robert H. and Philip J. Cook, *The Winner-Take-All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환경세 도입과 환경친화적 세계개편 -OECD에서의 최근 논의-

최준욱/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서론

환경문제는 OECD에서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며, 논의되고 있는 범위도 상당히 포괄적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 수년간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 온 의제가 환경세, 환경부담금, 오염권 거래제도, 예치금제도 등 소위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수단¹⁾의 활용에 대한 것이다. OECD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이며, 특히 1984년의 '환경과 경제에 관한 회의' 이후에 OECD는 각 회원국이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1991년 1월의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수단의 활용에 대한 권고안」²⁾의 채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연구결과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³⁾.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수단이란,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환경부담금이나 환경세 등의 도입을 통해서 각 경제주체로 하여금 오염유발 물질의 사용을 줄이게 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물건에 대한 예치금 부과 등을

1)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ECD, *Managing the Environment: the Role of Economic Instruments*, 1994 등에 있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 *Environmental Policy: How to Apply Economic Instruments*, 1991에 나와 있다.

3) 최근의 연구 결과는 OEC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Taxes*, 1996 등에 나타나 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통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도록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유인수단의 활용은 각국의 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초국가적이고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지구온난화 가스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세가 그 한 예로서, 중요한 국제정책의제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⁴⁾.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수단인 환경세는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환경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을 보면, 그 배경에 국내의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재정정책과 연계시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은 이미 1993년에 「세계와 환경에 관한 OECD의 보고서」⁵⁾ 등에서 강조되었다. 1996년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보고서의 초안이 작성되어, 10월에는 환경위원회에서, 그리고 11월에는 환경위원회와 재정위원회 2부 소위원회(working party 2)의 공동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두 번의 회의를 통해 수정된 보고서는 1997년 1월 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본고는 OECD에서 채택된 보고서⁶⁾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세 도입과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에 대한 OECD에서의 최근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제적 유인수단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기존의 여러 국내문헌에서도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기로 한다⁷⁾.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이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본고에서는 영어의 'Green Tax Reform'이라는 표현을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이라는 말로 번역하였다. 이 용어는 일부 국내학자들에 의해 쓰인 적이 있지만 아직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Green Tax Reform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의는 없다. 따라서 Green Tax Reform을 오히려 '녹색세제개편'이라고 직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혼선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는 국내에서 이미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편의를 위해 그러한 용어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OECD의 문서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Green Tax Reform이라는 용어가 단지 환경보호를 위해 세제를 개편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으로 환경세의 도입과 더불어 세계가 경제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수단이란 각 경제주체로 하여금 오염유발 물질의 사용을 줄이게 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도록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에 대한 논의는 OECD, *Global Warming: Economic Dimensions and Policy Responses*, 1995 등에서 찾을 수 있다.

5) OECD, *Taxation and Environment: Complementary Policies*, 1993

6) OECD, *Environmental Taxes and Green Tax Reform*, 1997

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 *Environmental Taxes in OECD Countries*, 1995 등에 나와 있다.

직접규제의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달했거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할 경우 행정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편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도 그러한 포괄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II. 경제적 유인수단의 도입 배경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에 OECD국가들이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수단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최근 10년간,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수단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모색

전통적인 환경정책의 수단인 직접규제의 방식 또는 '명령과 통제'라고 불리는 방식이 이미 한계에 달했거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할 경우 행정비용이 너무 큰 경우가 많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기존의 직접규제 방식에 추가하여, 세금이나 오염권 거래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을 도입하였다.

2. 규제개혁

각국의 정부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정부개입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생산비용 절감과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등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으며,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효율성이나 유연성 등 환경세나 기타 경제적 유인수단이 가지는 장점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3. 재정개혁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하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최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과 법인세율이 인하되었다. 법인세율의 인하는 보통 과세표준의 확대와 더불어 시행되었기 때문에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세율의 인하는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가들은 부가가치세의 도입 또는 간접세의 확대를 통해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세는 세원으로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OECD국가에 있어서 환경세 도입은 환경정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제개혁의 측면과 재정개혁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져 왔다.

4. 새로운 세원에 대한 모색

198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34%에서 38%로 높아졌다. 또한 실업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수요도 증가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적인 재정지출 또는 환경관련 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세는 새로운 세원으로서 상당한 매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OECD국가에 있어서 환경세 도입은 환경정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제개혁의 측면과 재정개혁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져 왔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과정은 새로운 환경세 도입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세는 이와 같은 재정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도 작용하였다.

III. 환경친화적 세계개편 (1):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1990년대 초반부터 몇몇 나라에서는 세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은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개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개편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대부분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이나 조세감면 규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첫 걸음이다.

국가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세제개편(재정지출의 개선도 포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을 하고 있다: ①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과 조세감면조항의 철폐, ② 기존 세제의 개편, ③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1.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과 조세감면 조항의 철폐

기존의 보조금이나 조세감면 조항이 비록 애초에 의도했던 바는 아니더라도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면,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 조항이나 보조금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에너지·교통·농업·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85년의 해밀튼 G-7 정상회담 이후, OECD는 이러한 보조금과 조세감면 조항을 발견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작업을 해 왔으며⁸⁾,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의 예가 <표 1>에, 교통관련 조세감면 조항 중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의 예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에 열거된 예는 주로 개인승용차의 이용을 과다하게 만드는 조세감면 조항에 관한 것들이지만,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 조항은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간척지에 대한 토지세 감면도 습지 또는 갯벌에 대한 간척을 과다하게 만들어 자연의 정화작용을 파괴한다⁹⁾.

이와 같이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이나 조세감면 규정을 발견하고 그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첫 걸음이다.

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 *Subsidies and Environment: Exploring the Linkages*, 1996 등에 나와 있다.

9) OECD, *Market and Government Failure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Wetlands and Forests*, 1992.

2. 기존 세제의 개편

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노력의 하나는 기존의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상대적으로 오염유발이 심한 제품이나 행위에 중과세하여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사용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새

〈표 1〉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예

| | 보조금의 예 | 보조금의 환경에 대한 영향 |
|--------------|--|--|
| 농업 | 전체 OECD 국가의 농업보조금은 연간 3,500억달러이며, 이는 OECD GDP의 약 2%에 해당된다. | 주변여건과 경제적 환경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러한 보조금들 중 일부는 환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예를 들면, 살충제와 비료 사용). |
| 산업 | 1986~1989년의 기간 동안 산업지원 활동의 정부순비용은 연평균 660억달러에 달한다. 이것은 보고서에서 고려한 22개 OECD 국가의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2.5%에 해당된다. 이 중 직접투자지원, R&D지원, 지역개발과 수출촉진은 각각 전체의 28%, 12%, 22%, 20%에 해당된다. | 천연자원의 처리과정과 에너지사용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각종 방출물과 폐기물도 증가한다(대략적으로 전체 방출물과 폐기물의 75%는 천연자원처리과정과 에너지사용에서 발생된다). |
| 에너지 | 6개 OECD 국가의 석탄보조금은 연간 103억달러이다. 미국의 에너지 부문의 연방지원은 연간 50억달러 이상이다. | 에너지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배기가스의 방출과 자원고갈을 초래한다. |
| 도로운송 | 미국의 예를 보면, 도로사회간접자원 투자의 79%만을 도로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반납세자가 부담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트럭 운송업에 대해 사실상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 철도 또는 수로사용보다 상대적으로 오염을 더 유발하는 도로교통을 유인한다. |
| 산업용수 농업용수 | 미국의 농업용수 관련 비용 중 25% 이하만이 사용자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전체 농가 중 6% 이하가 전체혜택의 절반 이상을 받는다. | 자연자원의 건조, 침식, 고갈을 초래한다. |
| 수산업 | OECD 국가 전체의 수산업 보조금은 연간 약 500억달러이다. | 어류의 고갈을 초래한다. |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 조항이나 보조금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에너지·교통·농업·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기존의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오염유발이 심한 제품이나 행위에 중과세하여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로운 환경세의 도입과 큰 차이는 없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유연휘발유와 무연휘발유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환경에 더 유해한 유연휘발유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납함유량만이 아니라 다른 오염요인까지도 고려하여 환경오염도가 낮은 휘발유에는 저율로 과세하고 있다. 또한 OECD국가 중에서 16개 국가에서는 이미 자동차 판매세 또는 자동차(보유)세를 환경오염도에 따라 차등과세하여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은 차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의 사용은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며, 에너지에 대한 과세는 상당히 큰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세를 개편하는 것은 세제개편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에너지세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환경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휘발유에 대한 과세의 수입은 전체 에너지세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휘발유 과세체계에는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일세율의 휘발유세에 추가하여 탄소세 또는 또는 기타 오염원인물질의 함유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차등과세는 생산자로 하여금 오염이 적은 제품을 새로이 개발하게

〈표 2〉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관련 조세감면 조항의 예

| | |
|------------|--|
| 주차공간 | 고용주에 의해 제공된 무료주차공간이나 주차비용의 할인은 사실상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
| 회사차량 | 몇몇 국가에서는 출퇴근용 회사차량의 사용이 사실상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
| 출퇴근 비용의 공제 | 출퇴근 교통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있어서 몇몇 나라에서는 공공교통과 개인교통을 차별하지 않는다. |
| 출퇴근 비용의 상환 | 출퇴근 비용의 면세상황이 가능하며, 피고용자가 업무상 출장을 갈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에 따른 비용이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

하는 효과가 있다.

3.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산, 소비 또는 처분 단계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할 수 있다. 오염유발 제품의 예로는 윤활유, 비료, 살충제, 재생불가능 용기, 수은 및 카드뮴 전지, 일부 화학제품, 포장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품 중 어떤 제품에 우선적으로 환경세를 도입하였는지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1985년에 유황세가, 1990년에는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 질소산화물, 염산에 대해 세금이 도입되었다. 영국에서는 1996년 10월에 쓰레기 매립세(Landfill Tax)가 도입되었다. 벨기에에서는 1993년의 환경세법 제정 이후 음료수용기,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카메라, 일부 산업용 포장재, 살충제, 종이, 배터리 등 일련의 제품에 대해 환경세가 도입되었다. 각국에서 도입된 환경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에 정리되어 있다.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 소비 또는 처분 단계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할 수 있다.

IV. 환경친화적 세제개편(2) : 세수중립의 원칙에 따른 진행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은 보통 추가적인 환경세의 부담이 다른 세금의 감면에 의해 상쇄되어 총조세부담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즉 세수중립의 원칙에 따른다. 추가적인 세부담이 강한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수중립의 원칙은 환경세의 도입을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국가에 있어서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 세부담이 증가한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스웨덴은 1991년에 GDP의 6%에 해당되는 산출물의 재배치를 초래하는 대대적 세제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대대적인 세제개편은 세수중립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었으며, 직접세의 경감과 더불어 다수의 간접세가 인상되고 탄소세, 유황세, 질소산화물세 등 다양한 환경세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덴마크도 1994년부터 1998년에 걸쳐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

많은 국가들은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의 세제를 좀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세제개편의 주목표는 소득세 한계세율을 인하하고 세제상의 일련의 도피구(loophole)를 제거하며 세부담을 소득과 노동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환경과 회소성 있는 자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1996년부터는 산업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 등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1998년까지 점차적으로 그 세율이 인상될 것이다. 정부는 세수입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에 대한 지원금이나 사회보장각출금의 고용자부담분 경감 등을 통해 다시 산업부문으로 환원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비교적 긴 환경세와 환경부담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환경세 체계는 1971부터 현재까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초기에는 환경세 수입이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환경에 다시 투자되도록 하기 위해 목적세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용수누출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세수입이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어 전반적으로 세제를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1996년부터 새로운 '에너지 규제세(Regulatory Tax on Energy)'가 도입되어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 사무실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도 적용된다. 이 세금은 1998년에 21억(네덜란드)길더에 해당되는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환경세 수입이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의 1.25%에서 1998년에는 2.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입은 소득세 감면을 통해 각 가정에 환원되거나, 사회보장각출금의 고용주부담분을 낮추기 위해 쓰여질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위원회(Green Tax Commissions)'를 만들어서 현재의 세제를 좀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보통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 독립적인 전문가, 국회의원, 각종 이익집단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이러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의 위원회는 1996년 6월에 이미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V. 환경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

환경세 도입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과연 환경세가 환경보호를 위

해 효과적인가라는 것이다. 환경세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증거는 아직까지 별로 많지 않다. 대부분의 환경세 도입 경험은 너무 최근의 일이어서, 그에 대해 의미 있는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환경세의 도입이 다른 직접규제 또는 자발적인 환경보호운동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이나 환경세 도입과 동시에 기술개발이 일어나고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도 환경세 도입의 순수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구분해 내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세가 오염억제를 위해 효과적이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볼 때 환경세는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환경세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단지 환경보호효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비록 환경세가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효과적일지라도, 다른 측면에서 심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환경세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환경세의 도입이 환경친화적인 세계개편이라는 틀 안에서 다른 세제의 개편과 더불어 행해졌고 단지 환경보호만이 아니라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가 동시에 추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환경친화적 세계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OECD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1. 환경세 도입과 세수

가. 환경세 수입의 규모

환경세와 관련된 논의 중 하나는 그것이 세수를 창출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환경세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확실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세수통계에도 다소 혼선의 여지가 있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의와 통계가 필요하며, 현재 OECD에서 이와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OECD 자체의 정확한 정의와 통계가 없기 때문에, EUROSTAT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EUROSTAT의 보고서¹⁰⁾는 “사용 또는 배출로 인해 환경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단위 또는 그에 대

환경세의 도입은 환경친화적인 세계개편이라는 틀 안에서 환경보호만이 아니라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10) EUROSTAT, “Structures of the Taxation Systems in the European Union,”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6.

환경세의 부과로 인해서 부과대상이 감소된다는 것은 환경정책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이나 재정측면에서 볼 때는 세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한 대리변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은 환경세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몇몇 나라에서의 환경세 수입을 추정하였다. 15개 회원국의 평균을 보면, 1980년에 환경세 수입이 GDP의 2.1%이던 것이 1993년에는 2.7%로 증가하였다¹¹⁾. 또한 전체 세수입 중에서 환경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도 1980년에 5.7%이던 것이 1993년에는 6.7%로 증가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면 1980년에 5.9%이던 것이 1992년에는 8.2%에 달했다.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1993년 이후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나. 환경세 수입의 지속성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경세 수입이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과연 환경세의 수입이 지속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환경세 수입은 재정측면과 환경정책 측면에서 볼 때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 환경세의 부과로 인해서 부과대상이 감소된다는 것은 환경정책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재정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세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측면의 이해와 환경정책의 입장의 차이가 너무 과장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세¹²⁾ 및 탄소세에 대한 수입은 단시일 내에 쉽게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환경세 부과 대상에 대한 사용감소로 인한 수입의 감소에 대응하여,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환경세의 세율을 인상할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이나 행정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소득증가에 따라 환경의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세율인상이 자연스럽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11) OECD 재정위원회에서 발간된 일부 보고서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에너지세를 환경세의 일부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12) 여기서는 EUROSTAT의 정의를 따르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세도 환경세의 일부로 보고 있다.

13) 환경세 수입이 현재의 다른 세금의 감면을 위해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좀더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다. 세수입의 활용문제

환경세 수입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환경세 수입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양하다. 환경세 수입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고, 현재의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기존의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데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¹³⁾. 많은 회원국에서 실업률

이 높고 조세측면에서 큰 경제적 왜곡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세 수입을 큰 왜곡을 초래하는 기존의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환경 개선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이러한 선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세 수입의 활용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세 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느냐 또는 그것을 목적세화하여 수입의 전체 또는 적어도 일정 비율을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로 편입하느냐의 문제이다. 현재까지의 경험을 보면, 환경세 수입을 목적세화하여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경우에 환경세 도입이 정치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제전환국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환경개선 목표를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환경세 수입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특별회계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세 수입이 특별회계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세 수입과 환경지출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프로그램의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환경프로그램이 적정기간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환경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부분의 재원이 부족해져 결국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환경세 수입이 특별회계로 편입되는 체제는 잠정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환경세 수입을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것이 환경세 도입의 정치적 수용성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반예산으로부터 프로그램 평가(Programme Evaluation)를 통해서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환경지출액을 미리 정하고 그것을 환경세 도입과 더불어 발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환경세 수입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수입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세 수입과 환경지출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프로그램의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특정 환경프로그램이 적정기간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과도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2. 환경세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가. 논의의 배경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민해 왔다. 실업률이 높은

환경세라는 새로운 정책변수가 등장하자 그것을 실업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지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높은 근로소득세율이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실업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고령화 등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OECD국가들에서의 근로소득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것이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OECD국가에서의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각출금(근로자부담분과 고용주부담분을 모두 포함)을 포함한 세율의 평균은 1981년에 34%에서 1994년에는 34.7%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세라는 새로운 정책변수가 등장하자, 그것을 실업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고려할

〈표 3〉 근로소득으로부터 환경으로 세부담을 전환한 예

| | 조세전환 |
|------|---|
| 덴마크 | 환경세의 세율 증가 또는 신설로 인해, 1998년에는 환경세 수입이 122억(덴마크)크로네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득세는 낮아졌으며, 특히 1996년부터 산업부문에서의 탄소세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입은 사회보장각출금의 고용주부담분 인하를 위해 사용되었 |
| 핀란드 | 1996년 9월부터 매립식 쓰레기처리세가 도입되어 연간 3억(핀란드)마르카의 수입이 예상되고, 에너지세의 개편에 따라 연간 11억(핀란드)마르카의 추가적인 세수입이 예상된다. 1997년부터는 이러한 추가적인 세수입을 활용하여 소득세율의 인하가 이루어진다. |
| 네덜란드 | 새로운 '에너지 규제세'의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사회보장각출금의 고용주부담분 인하에 쓰인다. |
| 노르웨이 | 1991년부터 탄소세가 부과되었으며, 1996년 6월 환경친화적 세계개발 위원회는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과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추가적인 환경세 수입은 대부분 근로소득세의 감면을 위해 쓰인다. |
| 스웨덴 | 1991년의 세계개발으로 인해 150억(스웨덴)크로네의 추가적인 환경 관련 세금이 거두어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한계소득세율이 인하되었다. 환경세 수입을 활용하여 사회보장각출금의 고용주부담분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
| 영국 | 1996년 10월에 도입된 매립식 쓰레기매립세로부터의 추가적인 수입은 사회보장각출금의 고용주부담분을 0.2% 포인트 낮추는 데 사용된다. |

수 있는지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EC에서는 환경세의 도입과 더불어 근로소득세를 감면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환경세의 도입과 더불어 근로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3>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나. 평가

근로소득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를 인하하는 것이 고용을 증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근로소득세율의 인하가 환경세의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환경개선과 실업률 감소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며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노동시장의 탄력성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인하가 환경세의 도입과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부담은 줄지만 환경세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경감만을 고려하는 경우처럼 실업률 감소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노르웨이의 환경친화적 세계개편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교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 환경세 도입과 더불어 시행된 근로소득세율의 인하는 약하기는 하지만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다른 연구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고용이 증대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여, 시뮬레이션 분석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결국 환경세의 도입과 더불어 시행되는 근로소득세의 인하가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별 노동시장의 탄력성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세율의 인하가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결과에서도 그 수치가 매우 작게 나타난다는 점은,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근로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세율의 환경세 수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그 정도로 높은 세율의 환경세를

환경세의 도입과 더불어 시행되는 근로소득세의 인하가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별 노동시장의 탄력성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경세의 도입이
세수중립적인
세계개편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다면 물가인상
요인 중 상당부분
또는 전부가
상쇄될 수 있다.

도입한 나라는 없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근로소득세율의 인하가 고용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세 수입은 우선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환경세 도입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이나 기존의 환경세에 대한 세율인상과 관련된 논점 중의 하나는 그것이 물가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세 도입의 즉각적인 효과는 물가의 인상이며 이것이 임금을 인상시켜 물가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효과들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런 점들을 무시한 분석은 환경세 도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장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환경세의 도입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 그 재화의 가격인상폭은 세금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금 도입에 따른 특정재화의 가격인상폭은 그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가격의 인상폭이 세금보다 작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그만큼 소비 억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환경세의 효과가 의문시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이것이 생산자에게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상당한 유인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환경세의 도입에 따른 물가인상 효과가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분균형적인 접근방법에서 비롯된다. 물가인상의 효과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반균형 거시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격인상은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환경세의 수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다른 세금을 인하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에는 물가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세 수입을 이용하여 다른 재화에 대한 간접세를 인하하는 경우에 이것이 물가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환경세 수입이 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에도 임금의 기대치가 낮아져서 불가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경세의 도입이 세수중립적인 세계개편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다면 물가인상 요인 중 상당부분 또는 전부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연구결과는 세수중립적인 세계개편의 일환으로서 환경세가 인상될 경우에는 심지어 물가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환경친화적 세계개편 위원회에서 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도 환경세 도입 첫해에는 물가가 인상되지만 다음해부터는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한 물가인상에 대한 현재의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조세의 전가를 통해서 환경세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에 대해 가격의 변화를 발생시키며 이로 인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도 상당히 클 수 있다.

4. 환경세 도입의 소득재분배 효과

가. 논의의 배경

환경세의 종류가 늘어나고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그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환경세가 역진적이라는 이유로 환경세에 반대하는 시각도 크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반드시 환경세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규제 등의 다른 환경정책도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세가 직접규제 등 다른 환경정책보다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반드시 더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세는 다른 환경정책보다 훨씬 더 가시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역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역간, 소득계층간, 산업간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효과만이 아니라 간접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 직접효과는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환경세가 부과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의미한다. 한편 어떤 제품이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제품이 아니라도, 그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부담의 상당부분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와 같이 조세의 전가를 통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화와 보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서 환경세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에 대해 가격의 변화를 발생시키며 이로 인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도 상당히 클 수 있다.

나. 실증분석결과¹⁴⁾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역간, 소득계층간, 산업간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환경세의 소득재분배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탄소세를 비롯한 일부 에너지세의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효과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제품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많지 않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제품에 대한 환경세의 도입이 심각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부과대상의 사용액이나 세율이 크지 않다는 점과 현재까지의 부과대상의 대부분이 생필품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환경세가 소비가 대중화된 제품이나 생필품에 부과된다면 그로 인한 역진성은 당연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세와 탄소세는 대체적으로 약한 역진성을 가진다. 그러나 탄소세의 부과가 얼마나 역진적인지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EC에서 주장한 에너지·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그로 인한 부담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비교적 역진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약간 역진적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거의 비례적으로 나타난다.

다. 정책시사점

환경세의 역진성은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환경세 도입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환경세가 도입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약화(mitigation), 즉 역진적인 세부담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약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보상(compensation), 즉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한 역진성을 다른 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보상하는 방법이다. 물론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계층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14) OECD,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Economic Instruments for Environmental Policy*, 1994에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가 있다.

방법의 활용도 반드시 소득계층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약화는 보통 장기적인 해결책으로서보다는 환경세 도입에 따른 이행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더욱 일반적으로 쓰인다. 약화의 전형적인 예는 조세의 감면과 환급이다. EC의 에너지·탄소세 방안도 철강, 화학, 비철금속, 시멘트, 유리, 펄프, 종이 등의 6개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는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좀더 장기적인 약화정책의 예는 각국에서 난방용 연료보다는 수송용 연료에 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극빈자층의 난방연료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집단에 대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세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방법은 환경세 도입의 원래 목적을 흐리기 때문에, 이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대신 보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보상을 고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환경세의 세수가 결코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세의 도입을 다른 조세의 감면과 더불어 하나의 패키지로써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상당히 당위성이 있다. 환경세의 수입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역진성을 보상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에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심한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현재의 다른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에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환경세만큼의 역진성을 가진 다른 세제가 있다면, 환경세 수입이 이러한 조세의 감면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성격을 가진 특정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세율을 낮추거나 면세점을 높이는 정책과 소비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해서 특정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세계개편을 고안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현재의 세제하에서 저소득층이 지불하고 있는 세금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경우에는 세제로써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을 사회보장지출, 실업보험, 연금 등의 사회보장적인 이전지출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세의 도입을 다른 조세의 감면과 더불어 하나의 패키지로써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상당히 당위성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OECD 회원국에서의
최근의 환경정책은
특정 산업 또는
경제전체의 경쟁력에
대해서 거의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환경세 도입이 무역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¹⁵⁾

가. 논의배경

환경세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모든 환경정책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환경세는 기타의 환경정책 수단보다도 더욱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세의 도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주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한다. 경제학자들은 환경세를 포함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최저의 비용으로 원하는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구체적 환경세 도입안은 항상 산업 부문으로부터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대표적인 환경세 도입안 중 하나인 EC의 에너지·탄소세도 산업부문으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았으며, 일부 회원국들이 역외국가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나. 환경세 도입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환경세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경쟁력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이란 단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허구적인 용어일 수도 있다. 또한 국가의 경쟁력과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경쟁력은 단기적인 경쟁력과 다를 수 있다.

환경세가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산업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차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세의 부과가 특정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다루는 회사의 경우처럼 가격경쟁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세의 부과가 기업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세의 부과나 직접규제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경기준의 차이가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실증분석 결과는 없다. 실증분석 결과는 OECD 회원국에서의 최근의 환경정책은 특정 산업 또는 경제전체의 경쟁력에 대해서 거의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⁶⁾. 물론 이러한 결과는

15) OECD, *Report on Trade and Environment to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1995.

16) OEC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Taxes*, 1996.

역사적으로 볼 때 환경규제가 제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오염 저감과 억제를 위해서 쓰이는 비용은 1992년 모든 OECD 국가의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의 3.5% 이하이다. 오히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환경정책이 한 국가의 자원활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탄소세의 도입 등은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분야에서의 경쟁력 상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산업의 부담도 증가하거나 환경세 도입의 기본취지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환경세의 도입이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환경세 수입의 활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주로 탄소세 도입에 관한 것이었으며, 탄소세 수입의 활용에 따라서 GDP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C의 1994년 보고서는 에너지·탄소세의 수입이 사회보장각출금의 고용주부담분을 경감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에 GDP와 고용이 모두 장기적으로는 증가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미국을 예로 분석한 한 연구도 탄소세를 도입하고 그 수입을 자본소득세의 인하를 위해 쓰는 경우에는 실질 GDP가 증가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OECD의 GREEN 모형에 따른 추산에서도 EU국가에서 탄소세의 수입이 럼프섬(lump-sum)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GDP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각 회사, 산업,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역 또는 국내의 지역간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환경세를 산업별로 차별화해서 부과하는 방법과 국경조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을 생각할 수 있다.

환경세의 도입에 따른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완화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환경세의 도입이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환경세 수입의 활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환경세의 도입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환경세를 산업별로 차별화하여 부과하는 방법과 국경조세 조정을 들 수 있다.

환경세 도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 특히 수출지향적인 산업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면세나 환급 같은 보상체계는 일부 기업들이 산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퇴출하는 것을 막고 다른 산업에서의 세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있어서 산업과 소비 부분이 차별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직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소수이며, 이러한 국가들도 산업경쟁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문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 산업이 동일한 화석연료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접하게 된다면, 이는 탈세의 가능성을 유발시키고 탈세를 위한 노력과 탈세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될 것이다.

환경세의 국가별 차별 부과로 인한 특정 국가 특정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해결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국경조세조정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국내조세의 부과와 수출품에 대한 국내조세의 면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국경조세조정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 WTO에서 논의중이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국경조세조정이 위장된 형태의 보호주의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환경세의 도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세 도입에 따른 조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조절하는 것도 환경세 도입에 따른 조정비용을 줄이고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조세의 효과는 현재의 세율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특히 투자는 현재의 세율 이상으로 미래의 세율에 대한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들이 환경세 도입에 대한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이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VI. 요약 및 정책시사점

최근에 OECD국가에서는 환경세의 도입을 전반적인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기타 분야의 세계개편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개편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으로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ECD에서도 환경세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환경세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논점들에 대한 OECD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국가들과는 달리 높은 근로소득세가 실업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환경세의 도입을 반드시 근로소득세의 경감이라는 문제와 연계시킬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① 환경세 수입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환경세의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입은 환경관련 지출을 충당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목적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환경세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입이 현재 왜곡이 심한 조세, 특히 근로소득세가 높은 나라에서 근로소득세 감면을 위해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③ 환경세 도입에 따른 물가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④ 환경세 도입은 역진적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현재까지의 경험으로는 환경세 도입이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없지만, 고율의 환경세 부과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공조나 국제조세조정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OECD국가들의 일반적인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환경세 도입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몇몇 나라에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국가들과는 달리 높은 근로소득세가 실업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환경세의 도입을 반드시 근로소득세의 경감이라는 문제와 연계시켜

급격한 환경세의 도입이 지금의 현실에서 부적절하더라도, 환경세 도입에 대한 미래의 정책을 입안하여 공포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험과 OECD의 일반적인 논의는 우리에게 많은 정책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것이며, 특히 물가, 국가경쟁력, 소득재분배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입장에서 탄소세의 도입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일방적으로 외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에 그 수입은 현재 부족한 환경관련 지출을 늘리기 위해 쓰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OECD의 보고서가 권유하는 바와 같이, 환경세 수입을 지나치게 목적세의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조세수입의 일부분으로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세가 높지 않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른 OECD국가들과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탄소세의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입은 현재 역진적인 세부담을 초래하는 일부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의 인하를 위해 쓰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탄소세의 도입으로 인한 역진성을 보상할 수 있고, 동시에 물가인상에 대한 압박도 완화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의 개발시기에서 벗어나 선진경제로 가기 위한 구조조정기에 들어섬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탄소세나 기타 환경세의 도입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외개방의 여파에서 허덕이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약에 대한 세금의 도입 등은 정치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 그러나 경제의 구조조정이 그런 것처럼 환경개선도 단기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시행할 정책에 대해 미리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정책시행에 따른 이행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OECD 보고서의 언급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급격한 환경세의 도입이 지금의 현실에서 부적절하더라도, 환경세 도입에 대한 미래의 정책을 입안하여 공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OECD의 보고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환경세 도입 이전의 선결과제로서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과 조세감면 조항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KDI



〈부표〉 OECD 국가의 환경세 · 환경부담금(1996년 11월)

| |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룩셈부르크 | 멕시코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터키 | 영국 | 미국 |
|-------------------|----|-------|-----|-----|----|-----|-----|-----|----|-----|-----|-------|------|------|----|-------|-----|------|------|------|-----|------|-----|-----|-----|----|----|----|
| 자동차연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연·무연 휘발유 처등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휘발유 질에 따른 처등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유 질에 따른 처등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탄소세, 에너지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유류간접세(부가가치세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에너지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간접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탄소세, 에너지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탄세(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소산화물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관련 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판매, 등록시의 처등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이용, 등록시의 처등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투입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료세(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살충제에 대한 세금(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표〉의 계속

| |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룩셈부르크 | 멕시코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터키 | 영국 | 미국 |
|------------------------------|----|-------|-----|-----|----|-----|-----|-----|----|-----|-----|-------|------|------|----|-------|-----|------|------|------|-----|------|-----|-----|-----|----|----|----|
| 기타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터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플라스틱 용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회용 용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이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FC/할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회용 면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회용 카메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윤활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유류 오염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매(솔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세 과세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투자 고속감가상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제공 차량을 과세소득에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지원비 과세소득에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료주차 과세소득에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중교통이용시 출·퇴근 교통비용 소득에서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표〉의 계속

| |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룩셈부르크 | 멕시코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터키 | 영국 | 미국 |
|-------------|----|-------|-----|-----|----|-----|-----|-----|----|-----|-----|-------|------|------|----|-------|-----|------|------|------|-----|------|-----|-----|-----|----|----|----|
| 항공교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음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수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수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물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수누출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비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쓰레기처리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쓰레기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쓰레기 처리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독성쓰레기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쓰레기매립세(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소평 사후의 한·중 경제협력

한 상 국/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등소평은 중국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킨 중국 현대화의
총설계사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I. 鄧 사망의 의의

1978년 이래 중국의 실권을 장악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설계하고 이끌어 왔던 등소평(鄧小平, 1904년생)이 사망함으로써 등소평시대가 마무리되었다. 그는 실사구시적 개혁론자의 관점에서 중국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켰으며, 중국을 서구자본주의 분업체제에 전면적으로 합류케 한 중국 현대화의 총설계사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또한 그는 개혁·개방정책을 승계해서 추진할 중국 초유의 현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했으며, 1국 2체제 방안을 제시해서 홍콩 반환이라는 역사적 업적을 남겼다.

이와 같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던 그가 사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강택민(江澤民)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鄧의 사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돼 온 데다 그가 지명한 강택민 국가주석의 체제가 상당기간 동안의 시험기를 거쳐 이제는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카리스마적인 면모를 지닌 鄧의 사망으로 인해서 향후 중국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하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이와 같은 변화는 주변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의 대내적인 각종 변수들, 예를 들면 보다 확대된 경제적 자유에 대한 국민적 요구, 과거에 대한 비판(천안문사태 등), 인권문제, 정치적 자유, 부패, 홍콩 및 대만과의 미묘한 관계 등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대내적인 변수들을 살펴보고, 대외관계 및 한·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II. 향후의 중국 정치 및 권력구조 분석

鄧 사후의 중국의 정치 및 권력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이미 지난 수년 동안 등소평의 지지하에 강택민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江은 지도부 내의 의견조율과 화합을 원활히 이루어 왔고 최근 들어 이 같은 그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비록鄧의 후계자인 강택민이 정부, 당, 군의 실질적인 최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지만, 일부에서는鄧 사후의 중국 지도부 내의 권력투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권력 승계 시나리오에는 현 집단지도체제의 유지, 개혁파의 정권 장악, 보수파의 정권 장악 및 지역분할 등이 있다. 그 중 강택민을 중심으로 정치국 상무위원(7인)이 견제와 균형을 이룬 가운데 현 집단지도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첫째, 등소평의 지지하에 7년여 동안 운영되어 온 집단지도체제가 안정되어 있고 둘째, 현 정권의 핵심 3인(강택민, 교석(喬石), 이봉(李鵬)) 중 어느 누구도 1인 독재에 필요한 절대적 권력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보혁파(保革派) 모두에 안정·단결이 공생의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넷째, 지난 수년 동안 중국식 시장경제체제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고 대부분의 중국인이 개혁·개방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요 정책에 관한 최종 결정은 당분간 1인의 독주보다는 정치국 상무위원의 견제하에 생존 원로들의 자문과 조정을 거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년 10월 제15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동 대회에서 강택민의 5년 임기 당총서기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어 2002년 제16차 대회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 체제의 안정

鄧 사후의 대표적인 권력 승계 시나리오에는 현 집단지도체제의 유지, 개혁파의 정권 장악, 보수파의 정권 장악 및 지역분할 등이 있다.

향후 중국의 정치 및 권력구조는 강택민 중심의 집단지도체제하에서 단기적으로는 공산당 1당 체제가 지속되고, 개혁·개방정책 노선이 지속될 것이다.

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범죄 증가 및 만연된 부정부패 현상에 따른 국민적 불만이 해소되어야 하고 둘째, 지역간 할거주의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력 약화를 방지해야 하며 셋째, 개혁에서 소외된 공산당 및 군부 내 불만 세력을 무마해야 하고 넷째, 평온한 대외관계 유지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관건이다.

개혁파의 정권 장악은 경제 침체로 국민의 불만이 가중될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으나, 중국 경제에 이미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보수파가 정권을 장악해서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은 개혁의 흐름으로 보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혁의 와중에서 중산층이 상당한 정도로 성장하고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화·다원화되었기 때문이다.

지역분할 가능성 역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특성상 희박하며, 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일부 선진국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정치 및 권력구조는 강택민 중심의 집단지도체제하에서 단기적으로는 공산당 1당 체제가 지속되고, 개혁·개방정책 노선도 지속될 것이다. 다만 개혁의 속도는 득실을 고려해서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관리 부패와 경제 범죄의 척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특히 강택민 지도부는 권력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깨끗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형성해야 한다. 이 중에서 부패는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부패와의 전쟁은 권력의 과도기중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동시에 이는 권력 다지기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혁간의 균형 유지로 안정 성장을 계속하면서 강대한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형성된 발전잠재력, 위기해소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의 정치는 전통적인 1인 체제에서 법적 권위가 존중되는 관료 중심의 체제로, 인치(人治, 關係:guan-xi)에서 법치(法治)로 전환될 것이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익집단간(도시와 농촌, 경제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등)의 갈등조정이 주요 현안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Ⅲ. 경제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정부가 경제 내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사회주의체제의 골격을 유지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경제체제 개혁을 도모함에 따라, 소유제도 부문에서는 다원화된 소유제구조로, 경제계획 측면에서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지도성계획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며, 분배제도 측면에서는 소득과 경제효율이 밀접하게 결합된 분배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중국경제는 지속적이고도 빠른 성장을 이룩했다. 1979에서 1995년까지의 GNP의 연평균성장률은 9.9%였고 1991년에서 1995년까지의 GNP의 연평균성장률은 더욱 높아져 11.9%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6년도의 GDP성장률은 9.7%를 시현하고(〈표1〉 참조), 1996년말의 외환보유고가 1,05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으로 중국사회는 소득이 향상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2억 5천만명에 달하던 절대빈곤층이 6,50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온포(溫飽)'가 실현됐고, 물질적 풍요를 초보적으로나마 누리는 '소강(小康)'의 단계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중국인들은 자부한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점진적인 시장화, 제조업 중심의 연해개발전략 및 단계적 대외개방정책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으로 중국사회는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온포'가 실현됐고, 물질적 풍요를 초보적으로나마 누리는 '소강'의 단계에까지 도달했다.

〈표 1〉 중국경제의 성장 추이

(단위 : 억달러, 달러, %)

| | 1980 | 1985 | 1990 | 1995 | 1996 | 96/80(배) |
|--------|-------|-------|-------|-------|-------|----------|
| GDP | 3,015 | 3,063 | 3,874 | 6,913 | 8,170 | 2.7 |
| 1인당GDP | 307 | 291 | 342 | 574 | 680 | 2.2 |
| 물가상승률 | 6.0 | 9.3 | 3.1 | 17.1 | 8.3 | - |

주 : 1. 1996년은 잠정치임.

2.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임.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올해 중국경제는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시장이 활황세를 타고, 지방정부의

단기적으로는 경제 위축이 우려될 수 있지만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경제정책의 기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투자수요 증대로 고정자산투자가 높을 것이며 대외무역부문에서도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199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물가상승요인이 상당부분 제거되었고, 농산물 가격과 공산품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992년 이후 계속된 교통·통신·에너지 등 기초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중국경제의 애로요인이었던 물류난과 원부자재 공급부족을 상당부분 개선시켰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경제 운용기조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전망해 보기로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는 사회·경제불안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요인들을 철저히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 7월 1일의 홍콩 인수 및 가을의 제15차 당 대회라는 대사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는 경제안정기조의 유지에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 전환한 중국의 경제정책이 더욱 안정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으며(일시적 긴축기조도 예상된다) 또한 당분간 경제개혁의 추진 속도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는 인플레이 압력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긴축금융기조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행정수단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지만 그 성장률은 앞으로 수년간 한 자리 수준에서 억제될 것이며, 투자나 산업생산의 증가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의 중앙경제공작회의(1996년 11월 21일~24일)¹⁾의 확정 사항이나 전국계획회의(1996년 12월 5일~8일)²⁾ 결과 및 중국사회과학원의 건의³⁾ 등이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⁴⁾. 다만 단기적으로는 중앙지도부가 鄧 사망에 따른 사회적 불안요인의 최소화를 위해 국유기업 개혁이나 금융정책과 같이 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부문의 개혁 추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위축이 우려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의 안정이 예상됨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이라는 경제정책의 기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WEFA, IMF 및 후지연구소(富士研究所)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은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향후 20년 동안 8~9%대의 경제성장을 시현하면서 미국, 일본에 버금가는 시장규

- 1) 1996년도 경제운용은 국민경제의 안정성장과 거시조정정책에 의해 인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억제된,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1997년도 경제운용의 방향은 1996년에 이룩한 거시관리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안정성장, 즉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정한 바 있다.
- 2) 1997년의 계획 경제성장률은 8% 내외가 적합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 3) 1997년의 적정 예상 경제성장률을 9~9.5%로 제시했다.
- 4) 9% 이하의 경제성장률은 기업의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결과가 되어 기업경영은 물론 금융과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고, 경제성장률이 10% 이상이 되면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져 투자과열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향후 수년간 심각한 인플레이 압력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8~9%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모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⁵⁾. 이러한 낙관적인 시각은 중국경제가 장기적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탄력이 이미 붙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등소평이 일선에서 은퇴하면서 후계체제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개혁·개방 노선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그 속도의 완급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공산당 강령과 헌법에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고, 정치국 상무위원 대부분이 개혁 성향 인물이며, 개혁·개방 실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 중국 공산당 정권의 유지·발전에 있으며 보수파도 동 노선에 동조하고 있고 다만 양자간에는 개혁 속도에 대해 이견이 있을 뿐이다. 둘째,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40%를 넘어서는 등 이미 외국과의 상관관계를 떠나서는 경제운용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개방기조의 후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겠으나 일시적인 수정, 즉 '성장'에서 '안정' 위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 곧 개방속도가 현재보다 다소 늦추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강택민 주석이 체제 안정을 위해 개방과정에서 소외된 보수세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개방후유증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층간·지역간 빈부격차, 인플레이션, 실업 등의 치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이 이 정책을 버리기에는 이미 자본주의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전으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넷째, 다수의 중국인들이 그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의식구조에 변화가 생겨 사상보다는 경제력을 우선시하는 사고를 갖고 있으며 또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사고를 바꾸기는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장악하든鄧의 개혁·개방 노선을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당한 수준의 고도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 내부에서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도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고 강택민 주석 역시 자신의 통치철학을 정신문화 강화에 두고 있다⁶⁾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중국 정세 분석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투자관망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건수와

강택민 주석이 체제 안정을 위해 개방과정에서 소외된 보수세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방속도가 늦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5) WEFA의 추정치에 의하면 중국의 2010년 GDP는 5조 3천억달러에 달하면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할 것이며, IMF는 201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앞지르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영국, 미국 등 일각에서 산업구조의 낙후,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6) 「9·5계획과 2010년 장기 목표」에서 밝히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을 위해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등 무역관련 사업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액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해서 개방 지향적인 정책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고,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중화학공업 육성 등을 위한 경제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외국인 투자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다.

향후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WTO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므로 대외경제정책이 보수로 회귀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 오히려 가입을 위해서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등 무역관련 사업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권력 안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대외경제정책이 불투명해져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부 권력의 안정과는 상관 없이 투명한 대외경제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외무역은 1997년의 경우鄧 사후 예상되는 긴축강화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확대 발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표 2〉 참조), 금년에 반환될 홍콩의 교역량까지 합하면 2000년에 중국과 홍콩의 교역량은 1조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WEFA). 그러나 무역기업에 대한 준조세 부담, 물가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무역기업 내부의 경영관리 효율 결여 및 적자 등 현안 문제의 해소가 장기적인 확대 발전의 관건이다.

〈표 2〉 중국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 : 억달러, 배)

| | 1980 | 1985 | 1990 | 1995 | 1996 | 1996/1980 |
|------|------|------|-------|-------|-------|-----------|
| 무역액 | 381 | 697 | 1,155 | 2,809 | 2,899 | 7.6 |
| 수출 | 181 | 274 | 621 | 1,488 | 1,511 | 8.3 |
| 수입 | 200 | 423 | 534 | 1,321 | 1,388 | 6.9 |
| 무역수지 | -19 | -149 | 87 | 167 | 123 | -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년 이후 주용기(朱鏞基)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개혁은 지난 수년간의 실험 기간을 통하여 이제 정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현재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는 연해지방의 우선개발에 따른 지역간·계

층간 소득 격차 확대, 인플레이션의 심화, 부패현상의 구조화에 따른 경제범죄의 급증,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의 개조 문제, 인프라시설 등 산업기반의 취약,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파생된 실업 및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사회 불안 등이 있다.

Ⅳ. 대외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

등소평이 주도한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우선의 유화외교였다. 따라서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조성해서 개혁개방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 외교의 제1목표였으며 현 집권층도 이와 같은 대외정책기조를 계승하였다. 그러므로 鄧의 사망으로 외교노선이 변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향후의 외교정책기조는 국내 정국과 맞물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국이 안정되면 대외관계도 유연해질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강경노선을 취하기가 쉬울 것이며, 대만독립문제·영토문제·소수민족문제·민주화와 인권문제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과 관련된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경제우선이라는 원칙이 유지될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미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일, 대유럽 외교를 강화하고 다극체제방식을 추진하며 해외시장을 확장해서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직결되는 지역으로, 인접한 한국·일본·대만과 동남아국가와는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1996년 대만 총선 당시 미국과 중국간에 조성되었던 긴장국면은 현재 정상화되어 있지만 양국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상호갈등 요인이 상존한다. 그러나 양국은 모두 상대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교류와 협력 관계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홍콩⁷⁾이 갖는 개방경제의 활력과 상징성을 주목하고 있고 또한 홍콩을 공동운명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정치제도의 이식으로 인한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홍콩문제는 대만과의 통일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대만과의 1국 2체제에 의한 원만

향후 중국정부는 중·미 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대일, 대유럽 외교를 강화하며 다극체제방식을 추진하고 해외시장을 확장할 것이다.

7)1997년 7월 1일 반환된다.

중국은 홍콩이 갖는 개방경제의 활력과 상징성을 주목하고 있고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도 홍콩의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 통일을 위해서도 홍콩의 안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1국 2체제가 향후 50년간⁸⁾ 유지될 전망이다. 현 지도부는 실용적인 경제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을 중국과의 중계무역지로서 또한 해외금융의 조달처로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홍콩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치개혁, 민주화 선동,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鄧의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인 긴장이 예상되나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중·미, 중·대만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므로⁹⁾ 이 지역의 정세 안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또한 중·대만(兩岸)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경제교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국 2체제에 의한 정치적 통일은 많은 시간을 요할 것이며 중국은 이를 위하여 지금보다 훨씬 유연한 자세로 대만을 품어 안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양안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희박하나, 다만 중국 지도부가 대만을 정국 안정카드로 활용할 경우 경교성 무력시위 가능성은 상존할 것이다.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까? 대외적으로 고립된 북한에게 중국은 거의 유일한 대외창구였으나, 鄧의 사망으로 국제 무대에서의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鄧의 사망 전에는 이데올로기적 교감 내지는 혈맹이라는 의식이 북·중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왔으나 鄧의 후계자들은 실리적인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북한 관계가 지금보다 소원해져 통상적 외교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북·중 관계가 실리적 차원으로 전환된다면 鄧 사후 북한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반면에 이는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서 북한요인을 배제시키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에게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자기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고 더욱이 중국의 외교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경제 현대화의 걸림돌로 인식할 정도로 한반도가 차지하는 역할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 분단구도의 안정적인 유지가 자국에 가장 유리하다"는 기본 입장에서 정경분리 외교를 강화하여 한국과는

8) 향후 50년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과 같은 발전속도로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서 2047년쯤에는 경제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세계경제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며 그때에는 상대적으로 홍콩의 제도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된다. 이에 필요한 시간이 50년이라는 것이다.

9) 금년 4월 들어 양국간에는 직항로(廈門→高雄)가 개설된 바 있다.

경제적 교류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북한과는 일정 범위 내에서 경제원조를 계속하면서 김정일의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중국은 남한을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로 삼아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의 고립이나 불이익에는 반대입장을 견지,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중국의 정국이 안정될 수록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입장이 견고해질 가능성이 증대하며 이로 인하여 한반도 통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의 외교가 북한 문제로 인해 중국에 끌려가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오히려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는 경제적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북한에는 경제원조를 계속하면서 현상유지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V. 한·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한·중간의 경제협력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까? 1992년 8월 수교 당시 한·중 양국은 경제교류와 협력이라는 제한된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경제는 물론 정치·군사·문화 분야에까지 그 폭을 급속히 넓혀 가고 있다. 한·중 경제협력 실적이 계속 증가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교역면에서 보면 중국은 현재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위의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하여 상호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중간에는 경제차관회의, 산업협력위원회, 경제공동위원회 등 20개에 가까운 민관 경제협의채널이 구성되어 있고 이들 위원회를 통해서 HDTV, 차세대교환기, 자동차부품, 원전 등 굵직한 사업의 교류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한·중 경제관계가 통상협력 단계에서 산업협력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1994년 한·중 산업협력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따라서 향후 한·중 경제협력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측면과 함께 경쟁적인 성격이 심화되는 양면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두만강유역 개발 등 동북아시아 협력의 동반자로서, APEC회원국으로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국의 현대화와 중화경제권간의 경제협력 확대는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중국이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있으며 향후 명분보다는 실리 위주의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될 것이다. 양국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기존 협력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부의 사회 경제불안에 따른 일부 교란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鄧 사 망 후의 사회적 동요와 혼란 방지, 강택민 체제의 안정을 위한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로 대중국 사업환경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과 경기과열 방지를 위한 투자 억제, 금융긴축에 따른 중국의 수출과 소비재 수입 둔화로 대중국 수출(섬유원료, 전자부품, 가전제품 등)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예상되는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와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사정 강화는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행정 누수 현상을 야기하면서 인맥관리가 어려워지고, 각종 투자 관련 인허가나 무역거래상의 대금 결제 지연이 우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사업환경 악화는 하반기에 가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사업환경이 개선되어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정권이 안정되고,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경제의 빠른 성장이 지속되고, 지방의 경제적 자율권이 확대되며, 중국의 WTO가입이 실현되는 등 사업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현대화와 중화경제권간의 경제협력 확대는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중국이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1990년 이후 연평균 38%씩 증가했으며, 1996년 199억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7.1%를 차지하면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한국의 대중국 무역 추이

(단위 : 억달러, %)

| | 1990 | 1992 | 1994 | 1995 | 1996 | 연평균증가율 |
|-------|-------|-------|-------|-------|-------|--------|
| 수 출 입 | 28.5 | 63.8 | 116.7 | 165.4 | 199.2 | 38.3 |
| 수출 | 5.8 | 26.5 | 62.0 | 91.4 | 113.8 | 64.2 |
| 수입 | 22.7 | 22.7 | 54.6 | 74.0 | 85.4 | 24.7 |
| 무역수지 | -16.8 | -10.7 | 7.4 | 17.4 | 28.4 | - |

주 : 연평균증가율은 1990~1996년 사이의 증가율임.
 자료 : 관세청, 통상산업부.

수출은 동 기간 연평균 64%씩 증가하면서 114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25%씩 증가하면서 85억달러를 기록해서 무역수지는 28억달러(1996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7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鄧 사후의 사회적 동요와 혼란을 방지하고 강택민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1996년도 증가율 20%보다는 다소 높으나, 연평균 증가율(수교 이후 연평균 32.9% 증가)에는 못 미치는 25~3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2000년에 무역규모를 500억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의 국내 종합상사들의 대중국 수출은 등소평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공략을 강화하여 올 수출목표를 작년보다 30% 이상 늘려 책정하고 있다. 7대 종합상사의 1996년의 대중국 수출액은 40억 2천만달러(홍콩경유 제외)이며, 금년에는 22.9% 늘어난 49억 4천만달러를 설정하고 있다.

1992년 8월 수교 이후 한·중 경제협력 실적이 계속 증가해서 중국은 1994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우리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표 4〉 참조).

1994년 한·중 산업협력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한·중 경제관계가 통상협력 단계에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대중국 투자는 종래의 양적 확대에서 산업협력 차원의 질적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1994년 한·중 산업협력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한·중 경제관계가 통상협력 단계에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표 4〉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달러)

|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누계 |
|------|-------|-------|--------|--------|--------|--------|--------|----------|
| 건수 | 30 | 69 | 171 | 376 | 832 | 721 | 677 | 2,876 |
| 금액 | 22.12 | 42.47 | 140.52 | 261.65 | 621.00 | 803.82 | 770.70 | 2,662.29 |
| 건당금액 | 0.74 | 0.62 | 0.82 | 0.70 | 0.75 | 1.11 | 1.14 | 0.93 |

주: 1. 투자실행 기준임.

2. 누계는 1996년말까지의 누계임.

자료: 재정경제원.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긴축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건

중국정부의 선별적
외자유치정책으로
우리의 한계기업과
시양산업의 이전은
줄어들겠지만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의
장기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수와 액수는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은 외자 유치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외국인 투자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다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사업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경제성장에 따른 민간 소비의 확대로 중국시장 확보에 초점을 맞춘 대기업들의 대형 투자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소매, 유통,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돼 업종이 다양화되고, 진출지역도 발해만과 연해 지역 위주에서 장강 유역 및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정부의 선별적 외자유치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의 한계기업과 시양산업의 이전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첨단산업, 인프라 등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의 장기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은 이미 섬유, 전기전자, 철강, 조선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의 경쟁국으로 부상했으며,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유화 등의 분야로 경쟁관계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Ⅶ. 우리의 대응 방안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중국의 정치 및 권력구조는 단기적으로는 강택민 중심의 집단지도체제하에서 개혁·개방정책 노선이 지속되겠지만, 개혁 속도의 조절은 불가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혁간의 균형 유지로 안정 성장을 계속하면서 강대한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중국경제는 이미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탄력이 붙었다. 따라서 중국경제 운용기조가 단기적으로는 안정 위주로 추진되면서 경제 개혁의 추진 속도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의 안정이 예상됨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이라는 경제정책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셋째, 외국기업의 투자는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활발해질 것이다.

넷째, 경제우선이라는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대한반도 정책은 정경분리 외교를 강화해서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한·중 양국은 서로를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이미 통상 협력 단계에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산업협력단계로 진입했다. 따라서 향후 한·중 경제협력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측면과 함께 경쟁적인 성격이 심화되는 양면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여섯째, 양국간의 경제협력관계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 협력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부의 사회·경제불안에 따른 일부 교란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사업환경이 개선되어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 위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재정립해야 한다. 향후 중국을 보는 시각을 개혁·개방정책의 퇴조 유무가 아니라 그 속도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중국경제는 이미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鄧 이후' 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강택민 이후' 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장래를 분석해야 한다. 즉 강택민 주석의 연임이 끝나는 2002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나 특정분야별로 접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鄧 사후에도 중국에서는 '안정 우선의 집단지도체제, 경제 중시의 개혁·개방정책노선' 이 유지되는 가운데 급격한 정치적 혼란의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중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기존 정책에 대한 재평가과정에서 물밑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익 확보와 위상강화에 주력함이 바람직하므로,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중국진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양국간의 통상 협약과 산업협력을 강화시켜 경제적 상호보완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 참여 등을 지원하고 대중 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을 실시하며 자금 융통을 위한 금융기관의 진출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한·중 교역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중저가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중국을 보는 시각을 개혁·개방정책의 퇴조 유무가 아니라 그 속도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화방지와 아시아의 공존공영을 유도하기 위한 자주적 외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외교적인 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중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않으면서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는 외교 논리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화방지와 아시아의 공존공영을 유도하기 위한 자주적 외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미·일·중과의 등거리 외교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鄧 사후에도 중국은 강택민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급격한 정치적 혼란의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업은 기존의 대중국 전략을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鄧 사후 예상되는 일시적인 사회적 동요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목표에 비중을 두고 치밀하고 신중하게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예상되는 중국의 사업환경 변화에 대비하면서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중국에서의 유망사업 발굴을 위한 조기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제한 업종 규제로 인해서 진출하지 못한 분야는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산, 매각 혹은 지분참여 허용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혁의 과도기하에 처해 있는 중국의 투자환경이 계속 변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외에서의 경쟁 격화에 대비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지방의 경제권한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중국 시장을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무역 및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 록〉

가.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 억달러)

| | 1993 | 1994 | 1995 | 1996(잠정치) |
|----------------|-------------|-------------|-------------|------------|
| GDP | 13.4 | 11.8 | 10.2 | 9.7 |
| 공업생산 | 21.1 | 18.0 | 14.0 | 13.1 |
| 고정자산투자 | 22.0 | 15.8 | 11.0 | 12.5 |
| 소비재소비 | 11.6 | 7.8 | 10.3 | 13.0 |
| 무역액 | 18.2(1,957) | 20.9(2,399) | 18.6(2,809) | 3.2(2,899) |
| 수출 | 8.0(917) | 31.9(1,210) | 22.9(1,488) | 1.5(1,511) |
| 수입 | 29.0(1,040) | 11.2(1,156) | 14.2(1,321) | 5.1(1,388) |
| 무역수지 | (-123) | (54) | (167) | (122.4) |
| 소비자물가 | 14.7 | 24.1 | 17.1 | 8.3 |
| 소매물가 | 13.2 | 21.7 | 14.8 | 6.1 |
| M ₂ | 24.0 | 34.4 | 29.5 | 25.3 |
| 외환보유고 | 212.0 | 516.2 | 736 | 1,050 |

주 :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인민일보』, 1996.12. 31

South China Morning Post, 1997. 1. 10 및 14일자

나. 등소평에 대한 평가

① 오투기 인생(不倒翁)

- 공산당 투쟁사에서 세 번의 실각(1933, 1966, 1976)
- 기다릴 줄 아는 그의 성격과 모택동의 능력 인정

② 절대적 영향력을 구비한 중국정치의 조정자이며 개혁·개방정책의 구심점 역할 수행.

③ 실사구시적 개혁론자이나 정치 민주화는 거부.

- 가난이 공산주의가 아니다. 흑묘백묘(黑猫白猫)론.
- 개혁·개방과 경제현대화도 4개의 기본원칙(사회주의 노선, 인민 독재, 공산당의 영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하에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함.

- 1989년의 6·4천안문 사태는 무력으로 진압.

④ 미래에 대한 통찰력 구비

- 중국 초유의 현 집단지도체제 구축.

- 홍콩의 1국 2체제 방안 제시.

다. 덩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① 개혁·개방 정책의 특징

- 점진적 개방 : 경제특구(經濟特區) 개방에서 전방위 개방으로 나아감(점 → 선 → 면).

- 시험적 개방 : 특정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실시 후(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함.

- 궁극적인 목표 : 점진적이고 시험적인 개혁·개방 정책 실시 → 체제의 내·외부적 충격 완화 → 현 체제의 안정 유지 → 안정된 바탕으로 부의 창출 및 축적 → 현 정권의 유지·발전

② 개혁·개방정책의 성공 요인

- 정치적 요인

· 경제 중심의 개혁을 통해서 정치적인 충동을 최소화하였음(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은 정치 및 경제 개혁을 동시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었음).

· 중국 전통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혼합된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체제간 거리 축소가 가능했음.

· 전통과 개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적절히 조화한 덩소평식 실리주의와 덩소평의 리더십(대중적 인기, 카리스마적인 권력 장악).

- 경제적 요인

· 거대한 내수시장,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고급 인력)을 보유하여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유리했음.

· 대중국 투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화교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함.

· 폐쇄경제로 인한 대외적인 약점을 홍콩을 활용한 중계 무역으로 보완이 가능했음.

· 홍콩은 중국과의 중계무역지로 기능했고, 해외금융의 조달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했음.

- 사회·문화적 요인

- 경쟁, 치부(致富), 소비 개념이 평균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논리를 대체.
- 이는 중국인 특유의 가치관과 금전관과도 일치함.

라.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추이 및 최근의 정책 변화

① 1990년대 들어와 중국은 외국인투자가 급증해서 1996년말 현재 누계는 281,298건, 계약금액 4,624억달러, 실행액 1,720억달러를 기록.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 건, 억달러)


| | 1992 | 1993 | 1994 | 1995 | 1997. 1~11 |
|------|--------|---------|--------|--------|------------|
| 계약건수 | 48,764 | 83,487 | 47,549 | 37,011 | 22,034 |
| 계약금액 | 587.4 | 1,114.3 | 830.9 | 909.7 | 655 |
| 실행액 | 112.9 | 260.2 | 339.5 | 377.0 | 369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② 투자규모와 투자실행액이 증가하고, 진출지역이 내륙으로 확산되고, 업종이 고도화되고 있음.

③ 최근 인건비의 상승으로 저비용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상실되고 있음.

④ 최근의 정책은 양에서 질로 변화되고 있음.

- 단순조립생산, 환경오염산업 등 → SOC, 에너지, 전자, 화학 등. 



정책토론투리포트

● 한·EU 주세협의 대비 주세제도 개편방향

- * 이 원고는 1997년 4월 22일 한국조세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한·EU 주세협의 대비 주세제도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국 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의 요약입니다. - 편집자 주 -

한·EU 주세협의 대비 주세제도 개편방향

성명 재/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현황 및 문제점

EU가 우리나라의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격차가 크다고 지적함에 따라 한·EU 주세협약이 개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지난 4월 2일 EU는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였다.

작년에 열린 일·EU 주세협약에서 소주와 위스키간의 주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EU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본이 패소한 바 있고 최근에는 칠레와 EU간에도 주세협약이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86년에 EU는 일본의 주세가 동결품 및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물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GATT 제3조 2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여 일·EU 주세협약을 개시하였으며, 1987년에 패널은 일본의 주세법이 GATT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은 주세율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 EU는 일본의 주세제도가 여전히 위스키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하여 주세협약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본

을 WTO에 제소하였는바 일본이 패소하였다. 15개월의 이행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향후 5년에 걸쳐 위스키와 소주의 세율을 3% 이내로 조정하는 법안을 계획함에 따라 이 문제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일·EU 주세협약의 결과는 한·EU 주세협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가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협상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EU 주세협약에서 가장 큰 쟁점은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격차 문제인데 EU의 주장이 이미 일·EU 주세협약에서 승소한 바 있어 EU측은 이 문제가 패널의 판결로 이어질 경우 일·EU 주세협약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음주에 따른 사회적 외부비용 측면은 소홀히 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 통상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주세제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 개편방안

1. 세율조정방안

가. 제1안 : 현행 세율 유지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소주와 위스키의 소비형태와 주 소비자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바 양자간에 직접경쟁 또는 대체 관계에 있다는 EU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EU측의 주장에 따른 주세율 체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주세제도의 개편이 불필요하다. 다만 맥주의 경우 위스키보다 주세율이 높은바 이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 제2~4안 :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알콜 도수에 비례시키는 조정방안

한·EU 주세협정의 쟁점인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격차 문제는 일·EU 주세협약이라는 선례가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일·EU 주세협약의 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주세율을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주와 보드카는 사실상 동일하므로 동일 주종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주와 보드카, 위스키, 여타의 증류주, 리큐르 등

에 대해서는 알콜 도수당 세율을 동일하게 하고 외부불경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 방안은 기본적으로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알콜 도수에 비례하도록 일치시키는 것으로, 소주(25도)와 위스키(40도)의 세율을 1:1.6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한 것인데 이에 따라 위스키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100%로 하는 경우 소주의 세율은 62.5%가 되며, 위스키의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소주의 세율도 이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이 경우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은 현행 1:2.8에서 1:1.6으로 대폭 축소되며, 이를 알콜 1도당 세율로 환산하는 경우 그 비율은 1:1이 된다.

EU가 우리나라의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격차가

크다고 지적함에 따라 한·EU 주세협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EU는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였다.

다. 제5안 : 증류주 세율 동일화 방안

한·EU 주세협약에서 알콜 도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증류주에 대해 주세율을 일치시켜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모든 증류주에 대해 세율을 일치시키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알콜 도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대

의 통상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주세제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교육세율 조정방안

주세분 교육세에 대한 세율은 현행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한다.

2. 시행시기

제2~제5안의 경우 주세율 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연차적·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맥주 세율

맥주 세율이 위스키보다 높은 것은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외부불경제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맥주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주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바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맥주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

〈표 1〉 주세율의 개선방안

(단위 : %, 도)

| | | 증 류 주 | | | 알콜도수 1도당 세 율 | 맥 주 (증기적 조정) |
|----------------|-------------|-------|-----|---------|--------------------|-----------------|
| | | 소 주 | 위스키 | 소주:위스키 | | |
| 현행 세율 | | 35 | 100 | 1 : 2.8 | | 130 |
| 알콜 도수 | | 25 | 40 | 1 : 1.6 | | - |
| 제 1 안 | | 35 | 100 | 1 : 2.8 | - | 100 |
| 알콜 도수 비례 | 제2안: 위스키 현행 | 62.5 | 100 | 1 : 1.6 | 2.5 | 100 |
| | 제3안: 위스키 인하 | 50 | 80 | | 2.0 | 80 |
| | 제4안: 위스키 인상 | 81.25 | 130 | | 3.25 | 130 |
| 제5안: 증류주 세율 일치 | | 100 | | 1 : 1 | - | 100 |

〈표 2〉 주세분 교육세율의 개선방안

(단위 : %, 도)

| 현 행 | 개 선 방 안 | | 비 고 |
|----------------------------|---------|-------------|------------|
| 주세율 80%를 기준으로 10%와 30%로 차등 | 제 1 안 | 단일세율 10% 적용 | 주정과 탁주는 제외 |
| | 제 2 안 | 단일세율 20% 적용 | |
| | 제 3 안 | 단일세율 30% 적용 | |

요하다.

Ⅲ. 기대효과

EU의 주장과 달리 소주와 위스키간에 대체 관계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주세율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행 주세율 체계는 외부불경제 등의 측면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알콜 도수 1도당 세율을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주세제도의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며 또한 알콜 도수에 따라 주세율이 차등화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 측면도 상당 부분 반영된다.

소주와 일반증류주, 리큐르의 경우 세율 인상에 따라 가격이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주의 경우 가격인상의 절대액은 크지 않다. 다만 세전가격이 매우 높은 증류식 소주의 경우에는 가격이 크게 인상될 수 있으나 증류식 소주의 알콜 도수가 매우 높다는 점과 외부불경제 축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불가피하다.

세율 조정에 따라 주종간 상대가격 구조가 변화하여 시장점유율이 다소 변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 소주의 수요가 다른 주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바 대부분 맥주 등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는 반면 위스키에 대한 수요변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소주의 수요 감소로 인해 소주 제조회사의 경영압박이 예상되며 특히 대부분의 소주 제조사는 현재 결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할 경우 상당 부분을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주세율 체계는 외부불경제 등의 측면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주와 리큐르 등의 세율조정에 따라 세수가 최대 500억~2천억원 정도 증가(맥주 제외)할 것이며 알콜 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격차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수증가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는 소비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인바 실제의 세수효과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맥주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주세 수입은 매우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재정수지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맥주 세율의 조정은 필요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고려하기 어렵다.

〈표 3〉 주세율과 교육세율 조정에 따른 출고가격 변화효과

(단위: ml, 도, 원)

| | 소 주 | | | | 위 스 키, 브 랜 디 | | | 일반증류주 | 리 큐 르 | 맥 주 |
|----------|----------|----------|-------------|-------------|--------------|-------------|--------------|-----------|----------|-----------|
| | 일 반 | 김삿갓 | 안동소주 | 문 배 주 | 패스포트 | 원저프리미어12년 | 발렌타인30년 | 크리스탈(보드카) | 캡 틴 큐 | |
| 제품 용량 | 360 | 360 | 800 | 700 | 360 | 700 | 750 | 700 | 700 | 500(OB) |
| 알콜 도수 | 25 | 25 | 45 | 40 | 40 | 40 | 43 | 40 | 35 | 4 |
| 1996 세전가 | 232.67 | 628.16 | 11,726.41 | 10,221.64 | 3,171.58 | 10,000.00 | 112,980.86 | 1,140.82 | 1,818.18 | 242.61 |
| 1996 세후가 | 354.47 | 957.00 | 19,993.53 | 17,427.89 | 8,026.62 | 25,300.00 | 285,841.58 | 2,560.00 | 3,100.00 | 717.88 |
| 제1안 세후가 | 354.47 | 957.00 | 19,993.53 | 17,427.89 | 8,026.62 | 25,300.00 | 285,841.58 | 2,560.00 | 3,100.00 | 613.80 |
| (차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4.08) |
| 제2안 세후가 | 447.89 | 1209.21 | 30,312.77 | 24,736.37 | 7,675.22 | 24,000.00 | 284,598.79 | 2,760.78 | 4,100 | 587.12 |
| (차이) | (93.42) | (252.21) | (10,319.24) | (7,308.48) | (-351.40) | (-1,100.00) | (-1,242.79) | (200.78) | (1,000) | (-130.76) |
| 제3안 세후가 | 409.50 | 1,105.56 | 26,830.03 | 22,037.86 | 6,837.93 | 21,560.00 | 252,534.82 | 2,459.61 | 3,680 | 523.07 |
| (차이) | (55.03) | (148.56) | (6,836.50) | (4,609.97) | (-1,188.69) | (-3,740.00) | (-33,306.76) | (-100.39) | (580) | (-194.81) |
| 제4안 세후가 | 505.48 | 1,364.68 | 35,536.89 | 28,784.14 | 8,931.17 | 28,160.00 | 332,694.74 | 3,212.55 | 4,730 | 683.19 |
| (차이) | (151.01) | (407.68) | (15,543.36) | (11,356.25) | (904.55) | (2,860.00) | (46,853.16) | (652.55) | (1,630) | (-34.69) |
| 제5안 세후가 | 563.06 | 1,520.15 | 28,377.91 | 24,736.37 | 7,675.22 | 24,200.00 | 273,413.68 | 2,760.78 | 4,400 | 587.12 |
| (차이) | (208.59) | (563.15) | (8,384.38) | (7,308.48) | (-351.40) | (-1,100.00) | (-12,427.90) | (200.78) | (1,300) | (-130.76) |

- 주: 1. 일반증류주와 리큐르는 세후가격으로부터 세전가격을 역산한 것임.
 2. 세후가격은 세포함 공장도가격 기준임. 단 맥주의 세후가격(1996년)은 세전가격에 1997년의 주세율(130%)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3. 교육세는 모든 주류에 대해 20%의 동일 세율을 적용하였음(제2안). 단 제1안의 경우에는 현행 교육세율을 적용하였음.

〈표 4〉 주세율과 교육세율 조정에 따른 물가효과

(단위 : %)

| | | 소주 | 위스키, 브랜드 | 일반증류주, 리큐르 | 맥주 |
|-----|-------|-------|----------|------------|--------|
| 제1안 | 생산자물가 | - | - | - | -0.126 |
| | 소비자물가 | - | - | - | -0.088 |
| 제2안 | 생산자물가 | 0.098 | -0.005 | 0.002 | -0.158 |
| | 소비자물가 | 0.079 | -0.004 | 0.007 | -0.111 |
| 제3안 | 생산자물가 | 0.057 | -0.018 | -0.001 | -0.236 |
| | 소비자물가 | 0.047 | -0.013 | -0.004 | -0.166 |
| 제4안 | 생산자물가 | 0.158 | 0.014 | 0.008 | -0.042 |
| | 소비자물가 | 0.128 | 0.010 | 0.023 | -0.029 |
| 제5안 | 생산자물가 | 0.218 | -0.005 | 0.002 | -0.158 |
| | 소비자물가 | 0.177 | -0.004 | 0.007 | -0.111 |

주: 소비자가격은 출고가격 변화율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물가가중지수를 이용하여 직접효과만을 산출하였음.

〈표 5〉 주세율과 교육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 억원)

| | | 소주 | 위스키, 브랜드 | 일반증류주 | 리큐르 | 맥주 |
|-----|-----|-------|----------|-------|-----|--------|
| 제1안 | 주 세 | 0 | 0 | 0 | 0 | -3,150 |
| | 교육세 | 0 | 0 | 0 | 0 | -950 |
| 제2안 | 주 세 | 1,750 | 0 | 9 | 200 | -3,150 |
| | 교육세 | 550 | -300 | -2 | 70 | -2,000 |
| 제3안 | 주 세 | 950 | -600 | 0 | 109 | -5,250 |
| | 교육세 | 400 | -400 | -4 | 49 | -2,400 |
| 제4안 | 주 세 | 2,950 | 900 | 23 | 346 | 0 |
| | 교육세 | 800 | -100 | 1 | 96 | -1,350 |
| 제5안 | 주 세 | 4,100 | 0 | 9 | 272 | -3,150 |
| | 교육세 | 1,050 | -300 | -2 | 81 | -2,000 |

주: 1996년도 물량 및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치를 추정한 것이며 교육세의 세율은 20%로 가정하였음. 단, 제1안의 경우에는 현행 교육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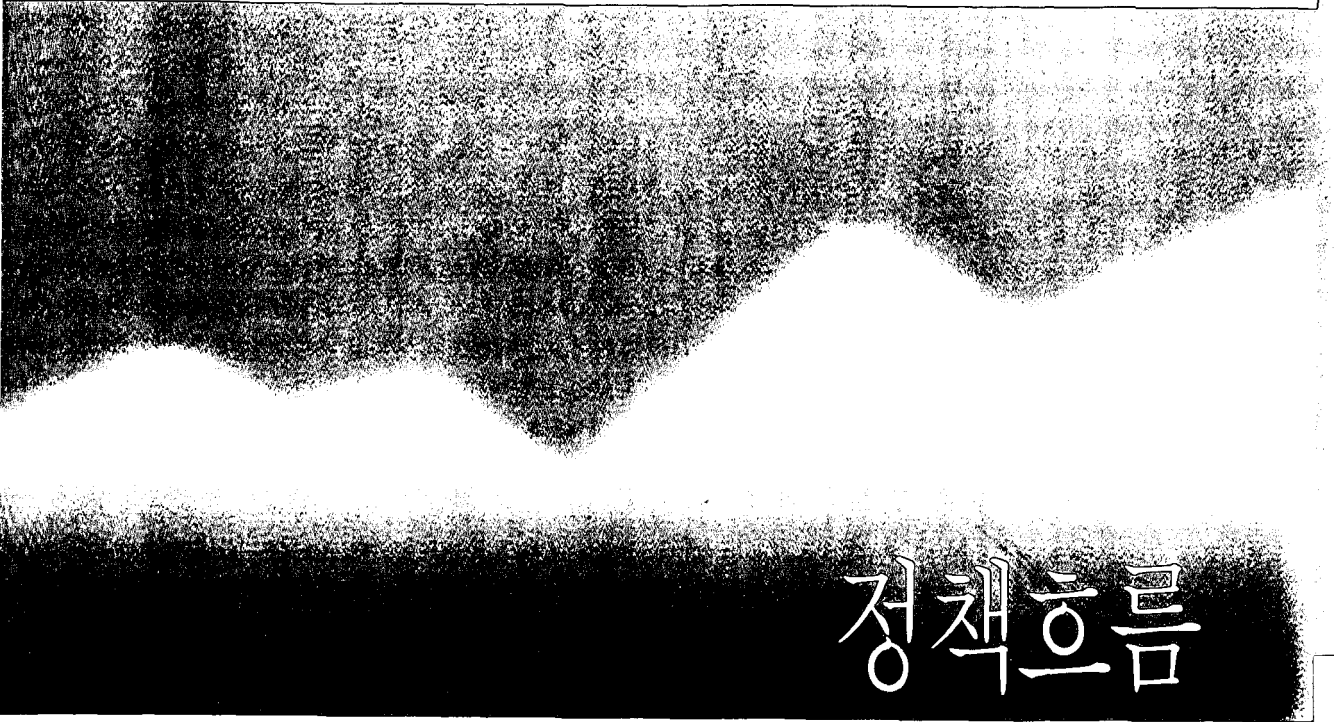
IV. 맺음말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형평성 측면이 강조되었을 뿐 외부불경제 축소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후자의 기준도 적용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한·EU 주세협약에서 소주와 위스키간 세율 격차 문제에 대해 일·EU 주세협약이라는 선례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세율 체계 개편에 있어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증류주의 경우 주세율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율 격차의 축소 또한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알콜 도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대내적으로 주세제도를 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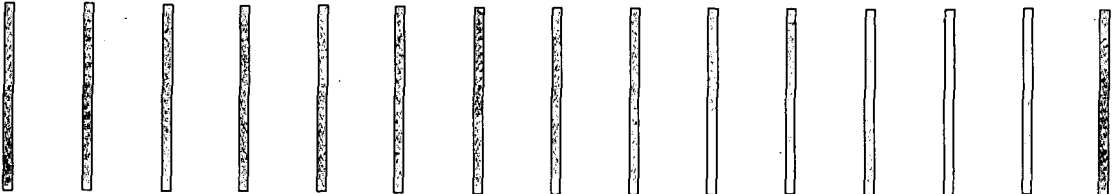
화한다는 점에서도 개편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는 만큼 EU측의 논리에 따라 개편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외부불경제 측면에서 고알콜주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위스키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소주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주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대외 협상에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외부불경제 측면에서 주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있는 만큼 우리의 사고를 전향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정책흐름

1.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2.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3.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 실시
4.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추진상황 및 주요내용



다음은 재정관련 주요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5월 7일에 발표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촉진대책(1997년 3월 31일), 한보관련 중소기업 지원시책(1997년 2월 10일), SOC 민자유치 활성화대책(1996년 11월 4일) 등 최근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사항 중 세제관련 사항을 조속 시행하기 위하여 6월 임시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 개인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시 출자액의 20% 소득공제
- 중소기업이 1998년 12월까지 증자시 증자액의 10%를 2년간 소득공제
- 만기 12년 이상 SOC 채권에 대해 15% 분리과세 선택허용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 신설
-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가 인수한 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50% 감면

○ 이번 개정(안)은 당정협의, 관계부처협의, 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임.

I.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 현 행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자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 대상자: 종합소득신고대상자(근로자 포함) - 대상출자: 창업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에의 직접 출자(지분인수에 의한 출자는 제외) * 의무 출자기간: 5년 - 소득공제: 출자액의 20% - 공제세액 추징: 5년내 출자지분 양도시 기공제세액 추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지급받는 이자·배당의 과세방법 보완 - 투자조합이 출자자들에게 이자·배당을 지급할 때 이자·배당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종합소득세) 과표에서 조합운영 비용 공제 -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배당도 상장법인배당의 경우와 같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 |

가. 개정이유

- 개인자금의 투자조합 출자를 유도하여 벤처기업

의 창업을 지원

- 1997년 3월 31일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시 보고사항

2.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세 감면확대

| 현 행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감면대상: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감면율: 30% - 적용시한: 1998년 12월 31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세(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도 상향조정 - 감면대상: '중기업' 까지 확대 - 감면율: 50%로 상향조정 - (현행과 같음) |

가.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지원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유도

- 1997년 2월 한보부도관련 중소기업 지원시책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과 소기업의 범위(종업원수 기준)
 - 중기업 : 제조업 300인 이하, 건설업 200인 이하, 기타 20인 이하
 - 소기업 : 제조업 50인 이하, 건설업 30인 이하, 기타 10인 이하

나. 적용례

-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재시행

| 현 행 | 개 정 안 |
|---|------------------------|
| ○ 법인이 개인주주로부터 금전 출자를 받아 증자한 경우 증자액의 일정률을 과세소득에서 공제 (1995년 12월까지 시행) | ○ 증자소득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재시행 |
| - 대상법인: 제조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 - 대상법인: 중소기업 |
| - 공제기간: 증자후 2년간 | - 공제기간: 증자후 2년간 |
| ※ 구체적인 공제대상 증자분 및 공제율은 시행령에 규정 | - 공제율: 10% |
| · 증자분: 1995년 12월까지의 증자분 | - 공제요건: 자기자본의 5% 이상 증자 |
| · 공제율: 증자금액의 8% (중소법인 10%) | |

가.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자기자금 조달 및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지원

- 1997년 2월 한보부도관련 중소기업 지원시책

나. 적용례

○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증자분부터 적용

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인지세 면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설>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인지세 면제 |
| | - 면제기간: 창업후 2년간 |
| | - 대상서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

가.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창업비용을 절감

- 1997년 2월 중소기업 지원시책 관련

* 인지세: 소비대차금액에 따라 1만원~35만원(10억원 초과시)

나. 적용례

○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II. SOC투자 확충지원

| 현 행 | 개 정 안 |
|------------------------------|--|
| ○ 공공법인에의 추가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전담법인을 공공법인에 추가 * 제1종 SOC시설에 한함. - 공공법인세율: 과표 1억기준 16%, 25% * 일반법인세율: 과표 1억기준 16%, 28% |
| ○ SOC채권이자 분리과세 | ○ 만기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채권이자 15% 세율로 원천분리과세 선택허용 |
| ○ 민자유치시설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건설후 국가에 귀속되는 1종 시설을 민자유치사업자가 무상 사용·수익하는 기간 중에 얻는 사용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사업시행후 시설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인수한 시설 운영자에 대해 면제 |

가. 개정이유

- SOC 민자유치사업 활성화지원
- 1996년 11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대책
- * 민자유치시설
- 제1종 시설: 도로, 하천, 철도, 도시철도, 항만, 어항, 공항, 댐, 수도 등 13개(준공과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

· 제2종 시설: 가스공급, 집단에너지시설,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 20개

III.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근로자우대저축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설> | ○ 소득세·주민세 및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 추가 신설 - 가입대상: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근로자 - 저축한도·유형: 매월 50만원 범위내의 정액불입식 저축 * 1인 1통장(1계좌) - 저축기간: 3년~5년 - 저축가입 및 납입: 근로자가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납입 - 저축취급기관: 저축을 취급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 |

가. 개정이유

○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추진과 관련

나. 적용례

○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 현 행 | 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1996년까지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여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유권해석을 변경(1997년 1월 30일)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국외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인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외유학 자격자의 교육비 - 상사 지사원의 자녀 등 부양 의무자와 동반하여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의 교육비 -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해외 체류한 특례유학생의 교육비 ○ 비과세되는 학자금 및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 |

가. 개정이유

○ 불가피한 국외교육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불법유학이나 무자격자가 유학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배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자: 고졸 이하자로서 동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대상자로 교육부장관·교육감·교육장이 인정한 자 및 고졸 이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유학: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자녀 등이 그 부모 등이 귀국한 후 체류하여 유학하는 경우

나. 적용례

○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IV. 기타 세제지원 확충

1.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 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추가 -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 손비인정 -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시 전액 손비인정 - 조직위원회가 대회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국내제작 곤란 대회용품에 대해 관세경감,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면제 |

가. 개정이유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 1988년 서울올림픽, 1997년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나. 적용례

- 법시행 사업연도분, 지출분, 양도분, 작성분, 수입분부터 적용

가. 개정이유

- 성업공사를 통한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

나. 적용례

-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 소멸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를 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 2년내에 매각시 - 특별부가세(양도세) 50%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성업공사)가 부실정후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 5년내에 매각시 - 특별부가세(양도세) 50% 감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업공사는 현재 공공법인으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로 확대 개편되는 성업공사에 대하여 계속 공공법인으로 인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간 합병시 -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비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간 '사실상 합병'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세제지원 *사실상 합병: 금융기관이 영업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게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에서 5월 2일에 발표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정부는 5월 2일 개최된 '제4차 경제대책회의' 에서, 물가안정 없이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재차 강조 하였음.
- 특히 최근의 물가안정 분위기와 경기하강 국면을 선진국형 저물가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음.
- 정부는 그동안 고물가구조를 초래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물가수준을 낮춰 나가 고,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거나 불완전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적극 제거해 나가기로 하였음.
- 특히 국민들이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서민가계에 과중한 부담이 되어 온 사교육비, 주거비, 식료품비 등의 경감대책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음.

I. 최근 물가동향

○ 4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연초 석유류 가격인상과 환율상승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말 대비 2.2% 상승에 그쳐, 1990년대 들어 가장 안정된 모습

(단위: %)

| | 1991~1995년 평균 | 1996 | 1997 |
|-------|---------------|------|------|
| 전년말대비 | 3.6 | 2.9 | 2.2 |

○ 2월까지의 작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3월 이후 납입금 안정,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상승률이 크게 둔화

(단위: 전년말 대비, %)

| | 1월 | 2월 | 3월 | 4월 |
|------|-----|-----|-----|-----|
| 1997 | 0.8 | 1.3 | 1.7 | 2.2 |
| 1996 | 0.9 | 1.4 | 2.2 | 2.9 |

○ 작년에 비해 공산품·개인서비스·공공요금·납입금 등이 크게 안정된 반면, 석유류·농축수산물·집세 등은 다소 높게 상승

○ 특히 공산품은 가격파괴 확산,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작년(1.7%)의 4분의 1 수준인 0.4% 상승에 그침.

○ 석유류는 연초 국제유가 및 환율상승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3월부터 하락세 지속

(단위: 전년말 대비, %, %p)

| | 1997.4 | (기여도) | 1996.4 | (기여도) |
|---------------------|--------|-------|--------|-------|
| 농축수산물 | 4.3 | 0.60 | 3.6 | 0.66 |
| 공산품 | 0.4 | 0.13 | 1.7 | 0.53 |
| 석유류 | 6.8 | 0.33 | 2.6 | 0.09 |
| 공공요금 ¹⁾ | 1.4 | 0.17 | 2.4 | 0.31 |
| 집세 | 1.3 | 0.17 | 0.9 | 0.11 |
| 개인서비스 ²⁾ | 2.5 | 0.56 | 3.7 | 0.63 |
| 납입금 | 6.4 | 0.23 | 12.2 | 0.55 |
| 소비자전체 | 2.2 | 2.18 | 2.9 | 2.92 |

주: 1) 납입금 제외

II. 우리나라 물가의 특징

○ 최근 물가상승률이 4%대로 낮아져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의 2~3%에 비해서는 높은 실정

(단위: 전년말 대비, %)

| | 한국 | 미국 | 일본 | 대만 |
|-----------|-----|-----|-----|-----|
| 1991~1995 | 6.0 | 2.8 | 1.1 | 3.9 |
| 1996 | 4.5 | 3.3 | 0.6 | 2.5 |

○ 물가수준도 외국에 비해 높은 편

- 서울의 생계비는 UN 조사대상 177개 도시중 7위(주거비 제외시에는 93위로 중위권)

○ 특히 사교육비, 주거비, 식료품비 등의 부담이 과중하고,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의 변동 폭이 커서 서민가계가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은 지수물가를 상회

UN의 생계비 조사결과 (1996. 9)

(단위: %)

| | 서울 | 뉴욕 | 동경 | 싱가포르 |
|---------|---------|---------|--------|---------|
| 전체생계비 | 118 (7) | 100(49) | 161(2) | 103(32) |
| 주거비 제외시 | 99(93) | 100(83) | 142(2) | 103(62) |

주: () 안은 전체 177개 도시중 순위

1. 고물가 구조의 주요 원인

가. 고도성장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총수요 압력

-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지속

1987~1995년중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단위: %)

| | 서울 | 뉴욕 | 도쿄 | 대만 |
|----------|-----|-----|-----|-----|
| GDP성장률 | 8.5 | 2.2 | 2.9 | 7.3 |
| 소비자물가상승률 | 6.2 | 3.7 | 1.4 | 3.2 |

나.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고비용구조 상존

- 그동안 경쟁국보다 높은 임금상승 지속

1987~1995년중 임금(제조업) 및 물가상승률

(단위: %)

| | 한국 | 미국 | 일본 | 대만 | 싱가포르 |
|----------|------|------|-----|-----|------|
| 명목임금상승률 | 16.1 | 2.7 | 2.8 | 9.8 | 9.2 |
| 소비자물가상승률 | 6.2 | 3.7 | 1.4 | 3.2 | 2.3 |
| 실질임금상승률 | 9.9 | -1.0 | 1.4 | 6.6 | 6.9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

- 높은 금리와 취약한 재무구조로 기업들의 금융

비용부담이 과중

(단위: %)

| | 한국 | 미국 | 일본 | 대만 |
|---------|-------|-------|-------|------|
| 시장금리 | 11.9 | 6.2 | 3.0 | 7.1 |
| 제조업부채비율 | 286.8 | 166.5 | 209.3 | 87.2 |

주: 1. 시장금리는 회사채 및 국공채 수익률 기준이며 1996년 평균임.

2. 제조업 부채비율은 1994년 수치임(한국은 1995년).

- SOC 부족 등으로 물류비가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음.

(단위: %)

| | 한국 | 미국 | 일본 |
|----------|------|-----|------|
| 물류비/총매출액 | 16.9 | 7.0 | 11.3 |

주: 1994년 기준임.

- 산업용지 가격이 높으며, 상업지 토지가격도 LA보다 약 6.5배.

고도 상업지의 토지가격 수준

| 서울 | 도쿄 | 타이페이 | 싱가포르 | 파리 | 런던 | 뉴욕 | LA |
|-------|-------|------|-------|------|------|------|------|
| 100.0 | 359.7 | 97.8 | 137.4 | 65.5 | 69.4 | 40.3 | 15.5 |

자료: 일본, 국토청 토지국; (사)일본부동산감정협회, 1995; 한국토지공사

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유통구조의 낙후

- 비경쟁형 시장(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비중이 70%를 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존속

- 농산물 유통구조가 특히 낙후되어 있고, 직판

장·대형 유통망 등 저가형 유통시설 확산 미흡

○ 농산물, 서비스, 유통업 등의 시장개방이 부진·일천하여 대내외 경쟁을 통한 물가안정효과 미흡

○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가격담합인상 등 불공정거래 관행 상존

라. 각종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요소의 잔존

○ 가격표시제 등을 제조업체의 가격통제 수단으로 활용

○ 유통시설 설립에 대하여 도시계획·투기억제 등 토지정책상으로 입지를 제한

○ 가전제품 전속대리점 등 배타적 판매망

○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Ⅲ. 물가안정대책

○ 물가안정은 서민생활 안정, 임금안정 및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의 바탕이라는 인식하에 경제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

- 특히 최근의 물가안정 분위기와 경기하강 국면을 선진국형 저물가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

○ 그동안 고물가구조를 초래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물가수준을 낮춰 나가고,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거나 불완전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적극 제거

- 재정긴축 등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 노력 강화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과피 확산

- 시장을 왜곡시키는 경쟁제한적 요소의 제거

-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공요금 안정

- 소비의 합리화·과학화

○ 아울러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계비 경감을 통해, 물가안정 효과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서민가계에 과중한 부담이 되어 온 사교육비, 주거비, 식료품비 등 경감대책 중점 추진

- 생활물가를 좌우하는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 방안 강구

1.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요소비용 절감 노력 강화

○ 재정의 긴축운영으로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

- 금년 세수목표를 2조원 축소하고, 세출규모도 이에 맞게 조정

- 1998년 예산도 긴축기조로 편성하여 예산증가율을 한 자리수 이내로 억제

○ 신축적인 통화운용 기조를 지속하여 금융시장 불안 해소

○ 자본자유화 일정을 대폭 앞당겨 추진하는 등의 환시장 안정대책 강화

○ 요소비용 절감대책 추진 강화

- 고용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금융비용, 지가, 물류비 등

축소 추진

2. 유통혁신을 통한 가격파괴 확산

- 가격파괴형 저가할인판매시설 확충
 - 대도시 교외에 대단위 쇼핑몰 개발 촉진
 - 공단 유휴지 등을 활용, 창고형 공장직판장(factory outlet)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소비자 정보 확산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노력 유도
 - 국내외 가격차 및 유통구조·마진 등에 대해서 조사
- 유통구조변화에 따른 재래시장 기능 개선방안 검토

3.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요소의 제거

- 공산품 유통관련 경쟁제한적 제도와 관행 개선
 - 의약품·화장품 등의 가격표시제 개선
 - 재판매가격유지를 인정하고 있는 도서정가제의 단계적 개선 추진
 - 전속대리점 등을 통한 배타적 거래관행 시정
- 사업자단체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가격 인상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4.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 공공요금 인상요인은 경영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폭을 최소화
 - 주요 공공요금의 조정신청시 공기업의 경영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
- 소비절약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격구조 개선 추진
- 공공요금 조정이 여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시기는 연중 분산

5. 실질적인 생계비 안정

가. 주거비 안정

- 택지 및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가격 안정 도모
-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 강구

○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주택임대업 활성화

○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 주택 관련 규제 완화

나. 식료품비 절감

- 농축수산물 유통 선진화
 - 산지 생산자 조직과 소비지 대형매장과의 직거래 촉진
 - 농산물의 규격화·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물류 비용 절감

○ 농산물 수입 및 유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수입 개방의 물가안정 효과 제고

○ 농협 계약재배 사업 등을 확충하여 신선식품 가격의 계절진폭 완화

다. 사교육비 경감

6. 소비의 합리화·과학화

○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건전화 운동 활성화
- '음식문화 개선' 등 실천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지역별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등 집중 추진
-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추진

○ 소비자의 물가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
-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물가정보 제공 기능 강화
- '직장협의회', '소비자물가감시협의회' 등의 기능 활성화

○ 기타 소비 합리화·과학화 시책 추진
- 재활용시스템 활성화
- 생활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 건전 음식문화 확산

IV. 맺음말

○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켜야 함. 물가는 경제

각 주체의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근로자,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의 물가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고통분담 노력 필요

○ 소비자

- 소비의 건전화·합리화·과학화
-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감시·견제

○ 근로자

- 성실한 근로를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 도모
-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자제

○ 기업인

- 기술혁신과 경영개선을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제품 생산
-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
- 가격의 담합 인상, 부당한 가격책정 등 불공정거래 관행 자제

○ 정부

- 수입개방, 국내공급 확대 등을 통한 수급안정기능 강화
- 우리 사회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의 긴축 운용, 규제완화, 불공정거래 감시 등 노력 강화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소비자정보 제공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 실시

* 이 자료는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에서 5월 6일에 발표한 「5월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 실시」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통상산업부는 21세기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담보제도를 확산시키고 장차 민간 금융기관이 동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술담보시범사업'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4월 25일 동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기술담보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법적 제도의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후속 세부시행절차를 마련하여 이번 5월 중순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임.
- 이번 기술담보시범사업의 시행으로 그동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평가인력의 양성 및 기술 평가기법 개발을 통한 기술 거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담보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실시 결과를 6개월마다 평가하여 담보대상기술 및 대상자금을 확대해 나가고 평가기법을 보완·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

1. 기술담보제도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 기술담보제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고 금융대출을 해 줌으로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제도를 말함.

○ 그동안 우리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결과 부동산 등 물적자산보다는 특허, 소프트웨어 등 기술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8%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기술금융제도는 부동산 등 물적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실정임.

2. 기술담보 시범사업의 필요성

○ 현재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그간의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기술에 대한 평가능력 및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않고, 기술거래시장 또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등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기술에 대한 환가(換價) 및 처분이 용이하지 않는 실정에서 기술담보제도를 민간금융기관이 스스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정부는 시범사업추진을 통해 기술평가기법의 마련, 평가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등 기술담보제도가 금융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판단 아래 향후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임.

3. 담보대상 기술의 범위 및 지원대상기업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담보의 대상기술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지적재산권 형태로 권리화되어 현행 법령상 담보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한정하되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무형의 기술력까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한정하되 매출액대비 R&D 투자액이 3% 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중 비상장기업을 '우선지원' 할 예정임.

4. 대상자금 및 융자조건

○ 금년에는 우선 통상산업부의 「산업기반기금」(1997 : 3,211억원)을 이용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은 금년도 손실보전금의 조성규모로 보아 200억원 내외로 예상됨. 내년부터는 금년의 시범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대상자금을 다른 정책자금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금년도 대출취급은행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와 중소기업은행이 담당하고, 융자조건으로 연리 7.5%, 2년 거치 포함 5년 이내의 융자기간을 설정할 예정임.

5. 기술평가 및 사업시행기관

○ 기술평가 및 사업시행기관으로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오랜기간 동안 수행하고 있어 기술평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지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 기관내에 기술담보가치평가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담보실을 신설하고, 기술평가 및 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임.

6. 기술의 평가방법

○ 통상산업부는 작년부터 산업기술정책연구소내에 「기술가치평가기법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평가 기법을 개발해 왔으며, 개발된 평가기법은 기술담보사업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

7. 금융기관의 대출손실에 대한 보전장치 마련

○ 기술담보 시범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외에 동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평가기법 개발, 전문평가인력의 양성,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등 향후 민간금융기관이 기술담보제도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음.

○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대출손실이 발생하여, 담보화된 기술의 처분만으로는 채권의 완전 회수가 불가능할 경

우 회수불능 부분에 대해서 70%까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임. 이를 위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라 징수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손실보전금을 매년 조성(금년도 20억원)해 나갈 계획임.

8. 기술담보제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금융대출을 원활히 해 줌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을 기술·지식집약형 구조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의 가치평가체제가 구축되어 기술의 매매, 투자 등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추진상황 및 주요내용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국제투자과에서 4월 14일에 발표한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추진상황 및 주요내용」의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 OECD에서는 1995년 9월 MAI 협상그룹을 구성하고, 1997년 5월 타결을 목표로 다자간투자협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임.
-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제10차 협상그룹회의부터 정회원으로 참여
- 정부는 OECD가입에 대비 1996년 8월 「MAI대책반」을 구성, 동 대책반을 중심으로 논의동향의 파악과 대응방안을 수립

- 현재 협정문안 협상과 유보안 협상이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민영화 등 특수항목, 분쟁해결절차, 금융시장 관련 세이프가드 조항 등 잔존 이슈와 지역경제통합기구(REIO)의 특례인정 문제, 노동 및 환경관련 사항 규정 등 정치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획된 1997년 5월 각료이사회까지는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유보안 협상도 협정문안 협상의 지연에 따라 순연될 전망

- 정부는 MAI 협정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보호와 투자관련 국내제도의 선진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므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되, 대외개방이 경제의 안정기조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협정문안 및 유보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임.

I.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경위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투자가 세계경제 및 무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국제투자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10억달러, %)

| | 1992 | 1993 | 1994 | 1995 |
|----------------|------|------|------|------|
| 국제투자 총규모 | 168 | 208 | 226 | 315 |
| 국제투자/세계총고정자본형성 | 3.2 | 3.8 | 3.9 | n.a |

- 자본·기술 및 경영지식의 이전, 고용창출 등 국제투자의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적극적인 투자유인정책을 채택

· 특히 개도국의 투자비중 증가(1980년대 20% → 1994년 37%)

○ 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활동 보호를 위해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해 왔으나, 세계자원의 최적배분과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및 투자자유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다자간규범의 제정 필요성 제기

- 각국간의 투자유치경쟁은 상호간의 알력과 세계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귀결된다는 경제적 논리에서 출발

- 국제투자규범은 각국간의 이해상충을 정리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역할

○ 1995년 OECD 각료이사회는 다자간투자규범

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1997년 5월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완료할 것을 결의함.

- 1995년 9월 MAI 협상그룹이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5개의 전문가그룹과 3개의 초안작성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12월 제10차 협상그룹 회의부터 참가

II. 다자간투자협정의 개요

1. MAI의 성격

○ OECD 양대규약의 자유화수준을 넘는 독립협정이며,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으로 가입을 위해 국회 비준 필요

○ OECD 가입과 MAI 수용여부는 형식상 별개의 문제이나, OECD 회원국의 경우 가입이 불가피함.

2. MAI의 특징

가. 광범위한 투자의 정의

○ MAI에서는 투자를 기업, 주식·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지적소유권, 계약에 따른 각종 청구권 등 유형·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어떠한 투자규범보다도 포괄범위가 넓음.

나.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 MAI는 계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설립후단계뿐만 아니라 투자실행단계의 자유화도 보장

- 기존 OECD 투자규범을 비롯한 다른 투자규범은 내국민대우를 구속적인 일반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음.

○ 양자간투자협정 및 OECD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의무 규정

- 추가적인 의무는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민영화시 외국투자자의 참여보장,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독점기업의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 등임.

다.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

○ MAI는 설립후 및 설립전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음.

- WTO가 규정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도 두고 있음.

○ MAI의 자유화의무가 여타의 투자규범에 비하여 광범위한 만큼 분쟁해결절차의 범위도 그만큼 넓으며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음.

3. 다른 협정과 비교

가. 양자간투자협정과 비교

○ MAI와 양자간투자협정의 가장 큰 차이는 MAI의 경우 투자자유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임.

- 양자간투자협정은 투자후단계의 투자보호에 대한 규범이며 투자자유화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투자보호에 있어서도 MAI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투자의 모든 단계에 적용하며 법률적 차별 및 사실상 차별을 모두 금지하여, 투자보호가 더욱 두터워짐.

나. 기존 OECD 투자규범과의 비교

○ MAI는 기존 OECD 투자규범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OECD 양대규약) 및 내국민대우 규정을 통합하고 투자자유화 및 보호수준을 높이는 의미가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MAI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일반규범화하고 있으며, 이들 의무를 넘어선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의 규범에 없던 투자보호 규정도 두고 있음.

- 또한 기존 OECD 규범과는 상이하게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두어 의무이행의 강제력 확보

III. MAI의 국내적 영향

1.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가. 경쟁의 촉진 및 경제체질의 개선

○ MAI는 국제투자에 있어서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투자제한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의 경우 이를 통해 각종 투자관련 규제의 완화와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MAI 참여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투자제도가 투

명하고 신뢰성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인정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가 촉진될 것임.

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

○ 외국인투자에 비해 해외투자가 많은 우리의 경우(1996년에 외국인투자는 32억달러, 해외투자는 60억달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선진국의 불합리한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어 선진국 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 가능

○ 특히 민영화, 독점, 이행의무 등 OECD 자유화 규약에 없는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보호받게 될 것임.

- 최근 프랑스 톰슨사의 민영화에서 대우가 배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MAI 가입시 협정상 의무규정 및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음.

2. 우려되는 사항

가. 국내기업에 대한 경쟁압력 증대

○ MAI가 체결되는 경우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해야 하므로 외국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국내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 다소의 영향 우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자유화율은 97.4%에 달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이루었으며, 1996년 OECD 가입 과정에서 투자자유화 수준에 대해 여타회원국들의 심사를 거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자유화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나. 분쟁해결절차의 제소 빈발 우려

○ MAI 협정은 신사협정과 같은 OECD 규약과 달리 협정위반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보상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어 의무의 강도가 다름.

-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제소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분쟁해결절차 제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분쟁해결절차의 제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부문 등에서는 중재법원에의 분쟁제소 이전 양국 통화 당국간 사전협의 절차 등 남소(濫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 도입이 논의중

IV. 유보안의 제출 및 유보안 협상

1. 각국의 유보안 제출 현황

○ 3월말까지 EU를 포함한 30개 회원국 모두가 유보안 제출

- 각국은 현재까지 논의된 협정문안을 기초로 잠정적인 유보안을 제출

2. 유보안 작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의 마련

○ 협정문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국이 유보안을 작성함에 따라 유보대상 의무의 범위 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상이하며, 상호비교가 곤란

- MAI 협상그룹은 각국간의 유보안 통일을 기하기 위한 유보안 작성 가이드라인 작성 예정

가. 유보할 수 없는 의무

○ MAI 협정의 근간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음.

○ 핵심적인 분쟁해결절차 조항 등

나. 사실상 차별

○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실상의 차별도 NT 위반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상 차별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그 기준으로 차별의 의도와 효과가 모두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하고 예측가능한 경우 등이 논의중

다. 현상동결 및 점진적 철폐

○ 국별 유보내용에 현상동결원칙이 적용된다는 데에 전반적인 합의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향후 새로운 유보 또는 기존 유보내용의 확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중

* 예: 향후 민영화 또는 독점해제의 경우, 새로운 기술 및 경제활동이 나타날 때 추가적 유보 가능여부

V. 향후 협상전망 및 대응

1. 향후 협상전망

○ 협상그룹 의장(Mr. Frans Engering)은 MAI 협상이 당초 협상시한인 1997년 5월보다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서울 MAI Symposium)

○ 협정문안 협상 전망

- 현재까지 미합의된 다수의 쟁점들을 고려할 때, 1997년 5월 26~27일 OECD 각료이사회 이전에 협정문안을 완전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역경제통합기구(REIO)의 예외 인정, 환경 및 노동관련규정 도입, 문화관련 이슈, 지방정부에 대한 MAI 적용문제 등 다수의 정치적 사항들이 MAI의 기한내 타결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유보안 협상 전망

- Text 협상의 지연에 따라 국별 유보협상도 당분간 순연될 전망

2. 향후 협상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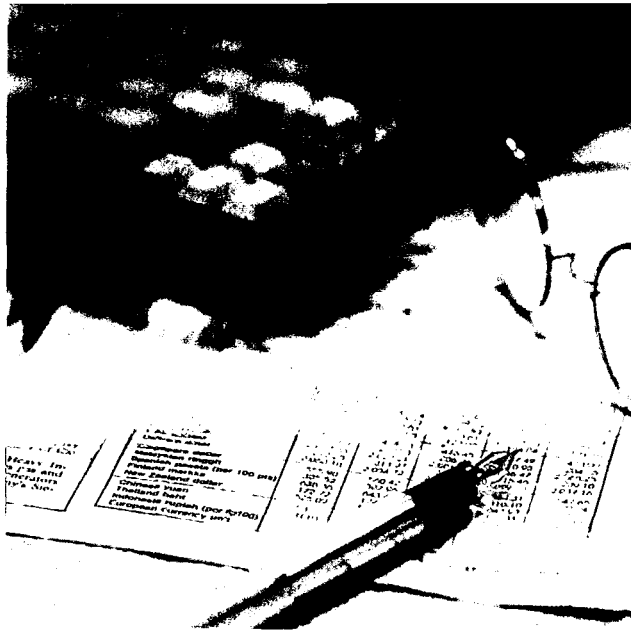
○ 협정문안 협상: 미합의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 협상과정에서 분쟁해결절차, 민영화, 유보안 작성지침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부각됨.

- 이들 분야는 우리와 이해관계가 큰 분야로서 관련전문가 및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입장을 재정립하고 협상에 대응

○ 유보안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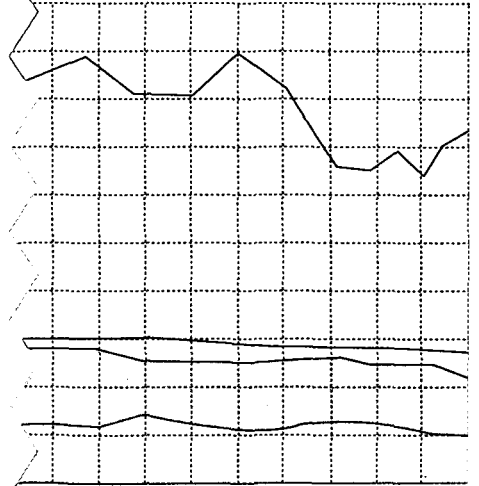
- 통일된 유보안 작성지침에 대한 각국간 논의가 진행중인바, 그간의 유보안 관련논의 및 각국의 유보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유보가 필요한 분야 및 향후 유보협상 대응전략 마련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관련 통계(1)

1. 제1종물품 세율변천
2. 제2종물품 세율변천
3. 제3종물품 세율변천
4. 제4종물품 세율변천
5. 제5종물품 세율변천
6. 과세경소 및 유증상소 세율변천





1. 제1종물품 세율변천

(단위: %)

| | | | | | | | | |
|-----|-----------------------|----------|-----------|-----------|-----------|-----------|-----------|----------|
| 1-1 | | 1970.1.1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8.3.26 | 1989.1.1 | 1995.1.1 |
| | 투전기 등 오락용품 | 100 | 200 | 100 | 100(70) | 60 | 25 | |
| 1-2 | | 1970.1.1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8.3.26 | 1989.1.1 | 1995.1.1 |
| |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 70 | 150 | 150 | 100 | 100(70) | 60 | 25 |
| 1-3 | | 1970.1.1 | 1974.1.14 | 1977.7.1 | 1982.1.1 | 1988.3.26 | 1989.1.1 | 1994.1.1 |
| | 모터보트·요트 대형 | 100 | 200 | 40 | 60 | 60(48) | 30 | 25 |
| | 소형 | 200 | 200 | 40 | 40 | 40(32) | | |
| 1-4 | | 1970.1.1 | 1977.7.1 | 1979.1.1 | 1988.3.26 | 1989.1.1 | | |
| | 설상·수상 스키용품 | 비과세 | 비과세 | 40 | 40(32) | 25 | | |
| 1-5 | | 1970.1.1 | 1973.2.16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8.3.26 | 1989.1.1 |
| | 공기조절기 | 65 | 50 | 70 | 65 | 40 | 40(28) | 25 |
| 1-6 | | 1970.1.1 | 1973.2.16 | 1977.7.1 | 1979.1.1 | 1982.1.1 | 1988.3.26 | 1989.1.1 |
| | 영사기, 촬영기 | 30~50 | 30~50 | 비과세 | 40 | 40 | 40(28) | 25 |
| 1-7 | | 1970.1.1 | 1977.7.1 | 1982.1.1 | 1989.1.1 | 1995.1.1 | | |
| | TV영상투사기 ¹⁾ | 비과세 | 비과세 | 40 | 30 | 2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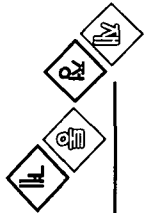
주 : 1) 1983. 1. 1~1988. 12. 31 : 잠정세율 적용함.



2. 제2종물품 세율변천

(단위: %)

| | | 1970.1.1 | 1973.2.16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0.11.13 | 1982.1.1 | 1987.6.9 | 1988.3.26 | 1989.1.1 | 1995.1.1 |
|---|----------------------------------|------------|------------|------------|------------------|-----------|--------------|-----------------|---|-------------|----------|----------|
| 2-1 | 냉장고 대형 | 65 | 50 | 70 | 65 | 40 | 40(28) | 40 | 40(32) | 40(28) | 20 | 15 |
| | 소형 | 65 | 50 | 70 | 65 | 40 | 40(28) | 28 | 28(22.4) | 28(19.6) | 15 | |
| 2-2 | | 1970.1.1 | 1973.2.16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7.6.9 | 1988.3.26 | 1989.1.1 | 1994.1.1 | 1995.1.1 | |
| | 전기세탁기 | 65 | 50 | 70 | 65 | 40 | 40(32) | 40(28) | 20 | 10 | 15 | |
| 2-3 | | 1970.1.1 | 1972.1.1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0.11.13 | 1982.1.1 | 1987.6.9 | 1988.3.26 | 1989.1.1 | 1995.1.1 |
| | C-TV 대형 | 65 | 50 | 70 | 65 | 40 | 40(28) | 40(28) | 40(28) | 40(28) | 20 | 15 |
| | 소형 | 50 | 35 | 50 | 45 | 40 | 40(28) | 28 | 28(22.4) | 28(19.6) | 15 | |
| ※ 잠정세율적용 : 종합유선방송텔레비전용 컨버터(1995.1.1~2000.12.31) | | | | | | | | | | | | |
| 2-4 | | 1970.1.1 | 1977.7.1 | 1979.1.1 | 1988.3.26 | 1989.1.1 | 1994.1.1 | 1995.1.1 | | | | |
| | VTR | 비과세 | 비과세 | 40 | 40(28) | 25 | 20 | 15 | | | | |
| ※ 잠정세율적용 - VTR : 1982.1.1~1987.12.31 - TV Camera : 1983.1.1~1988.12.31 - LDP, Camcorder : 1991.7.1~1997.6.30 | | | | | | | | | | | | |
| 2-5 | | 1970.1.1 | 1972.1.1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2.1.1 | 1989.1.1 | 1995.1.1 | | | |
| | 전기음향기기 | | | | | | | | 15 | | | |
| | 소형 기타 | 50 50 | 40 40 | 60 60 | 55 55 | 30 30 | 10 25 | 15(휴대음 모노제외) | (가로15cm이하×세로12cm 이하×두께5cm이하인 것 중 800cm³이하인 것을 제외) | | | |
| ※ 잠정세율적용 : CDP, DAT(1991.7.1~1997.6.30) | | | | | | | | | | | | |
| 2-6 | | 1970.1.1 | 1973.2.16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2.1.1 | 1984.5.1 | 1987.6.9 | 1988.3.26 | 1989.1.1 | |
| |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 가구 과세최저한 | 40~80 - | 40~50 - | 40~70 - | 55~65 - | 40 - | 28 - | 28 - | 28(22.4) - | 28(26) - | 15 - | |
| ※ 1994.1.1: 액체연료추가, 1995.1.1: 과세최저한 없음. 게임기: 3만원 게임기: 3만원 게임기: 3만원 게임기: 3만원 | | | | | | | | | | | | |
| 2-7 | | 1970.1.1 | 1975.1.1 | 1977.7.1 | 1982.1.1 | 1988.3.26 | 1989.1.1 | 1995.1.1 | | | | |
| | Grand Piano | 20 | 30 | 비과세 | 30 | 30(21) | 20 | 15 | | | | |
| 2-8 | | 1970.1.1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2.1.1 | 1988.3.26 | 1989.1.1 | 1995.1.1 | | | |
| | 크리스탈유리제품 | 10 | 20 | 20 | 비과세 | 20 | 20(14) | 10 | 15 | | | |
| 2-9 | | 1970.1.1 | 1977.1.1 | 1979.1.1 | 1988.3.26 | 1989.1.1 | 1994.11.9 | 1995.1.1 | | | | |
| | 커피·코코아 카카오마스 | 50 비과세 | 40 비과세 | 40 20 | 40(28) 20(14) | 20 10 | 20(15) 10 | 15 비과세 | | | | |





3. 제3종물품 세율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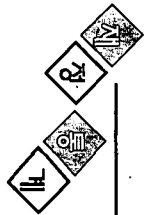
(단위: %)

| | | | | | | | | |
|-----|-------|----------|----------|-----------|-----------|-----------|-----------|----------|
| 3-1 | | 1970.1.1 | 1972.1.1 | 1977.7.1 | 1987.6.9 | 1988.3.26 | 1989.1.1 | |
| | 청량음료 | 15 | 20 | 20 | 20(16) | 20(14) | 10 | |
| 3-2 | | 1970.1.1 | 1977.7.1 | 1987.6.9 | 1988.3.26 | 1989.1.1 | | |
| | 기호음료 | 25 | 25 | 25(20) | 25(17.5) | 10 | | |
| 3-3 | | 1970.1.1 | 1977.7.1 | 1979.1.1 | 1982.1.1 | 1987.6.9 | 1988.3.26 | 1989.1.1 |
| | 자양강장품 | | | | | | | |
| | ┌ 녹용 | 70 | 25 | 20 | | | | |
| | └ 정제 | 10 | 10 | 10 | 20 | 20(16) | 20(14) | 10 |
| | └ 기타 | 30 | 25 | 20 | | | | |
| 3-4 | | 1970.1.1 | 1977.7.1 | 1979.1.1 | 1988.3.26 | 1989.1.1 | | |
| | 당 류 | | | | | | | |
| | ┌ 설 탕 | 40 | 30 | 30 (2) | 30(21) | 10 | | |
| | └ 전분당 | 비과세 | 10 | 10(28) | 10 (7) | 비과세 | | |
| 3-5 | | 1970.1.1 | 1977.7.1 | 1988.3.26 | 1989.1.1 | | | |
| | 특수화장품 | 20 | 20 | 20(14) | 10 | | | |
| 3-6 | | 1970.1.1 | 1975.1.1 | 1977.7.1 | 1982.1.1 | 1988.3.26 | 1989.1.1 | |
| | 기타피아노 | 20 | 30 | 비과세 | 20 | 20(14) | 10 | |

4. 제4종물품 서울변천

(단위: %)

| | | 1970.1.1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7.7.1 | 1988.3.26 | 1989.1.1 | 1995.1.1 | | | |
|-------|--------|----------|-----------|----------|----------|----------|-----------|----------------------------|----------|----------|---------|-----------|
| 4-1-1 | 보 석 | 100 | 200 | 200 | 100 | 100 | 100(70) | 60 | 25(기준가격) | | | |
| | 과세최저한 | - | - | - | - | 15만원 | 1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
| 4-1-2 | 귀 금 속 | 10 | 30 | 30 | 30 | 30 | 30(21) | 20 | 25(기준가격) | | | |
| | 과세최저한 | - | - | - | - | 15만원 | 1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
| 4-2-1 | 고급사진기 | 30 | 30 | 비과세 | 40 | 40 | 40(28) | 25 | 25 | | | |
| | 과세최저한 | - | - | - | 15만원 | 30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
| | (관련제품) | - | - | - | (비과세)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 | |
| 4-2-2 | 고급시계 | 20 | 20 | 20~30 | 10 | 비과세 | 30 | 30(21) | 20 | 25(기준가격) | | |
| | 과세최저한 | 1만원 | 6천원 | 6천~3만원 | - | - | 15만원 | 15만원 | 40만원 | 100만원 | | |
| 4-2-3 | 모 피 | 100 | 200 | 200 | 100 | 100(70) | 60 | 25(기준가격) | | | | |
| | 과세최저한 | - | - | - | - | - | 100만원 | 100만원 | | | | |
| 4-2-4 | 용 단 | | | | | | | 15 | | | | |
| | 모제품 | 40 | 30 | 40 | 40 | 40(28) | 20 | (100만원 또는 m ² 당 | | | | |
| | 기타 | 40 | 30 | 20 | 20 | 20(14) | 10 | 5만원 중 른금액) | | | | |
| 4-2-5 | 가 구 | 20 | 20 | 20 | 40 | 20 | 40 | 20 | 15(12) | 15(10.5) | 10 | 15 |
| | 과세최저한 | 3만원 | 1만원 | 1만원 | 20만원 | 10만원 | 2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 50~200만 | 300~500만원 |





5. 제5종물품 세율변천

(단위: %)

| | | 1970.1.1.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0.11.13 | 1982.1.1 | 1983.7.1 | 1987.6.9 | 1988.3.26 | |
|-------------|-------------|-----------|-----------|--|-----------|------------|-----------|------------|-----------|-----------|--|
| 5-1 | 승용자동차 | | | | | | | | | | |
| | ┌ 지프 | 30 | 배기량별 | 20 | 20 | 20 (14) | 10 | 10 | 10 | 10 | |
| | ├ 1500cc이하 | 30 | 40 | 15 | 15 | 15(10.5) | 15(10.5) | 15 | 15(10.5) | 15(10.5) | |
| | ├ 2000cc이하 | 30 | 50 | 20 | 20 | 20(14) | 20 (14) | 20 | 20 | 20(16) | |
| | └ 2000cc초과 | 30 | 100 | 40 | 40 | 40 | 40 | 40 | 40 | 40(28) | |
|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5 | 10 | 10 | 15 | 15 | 15 | 15 | 15 | 15(10.5) | |
| | | 1989.1.1 | 1994.1.1 | ※ ① 1989.1.1부터 800cc 이하인 것은 비과세 ② 1987.10.5부터 이륜자동차는 125cc (전기사용시 1KW)초과의 것에만 과세 ③ 캠핑용자동차는 2000cc 초과 세율로 과세 ④ 9인승 이상 지프는 1994.9.1부터 과세 | | | | | | | |
| | 승용자동차 | | | | | | | | | | |
| | ┌ 지프 | 10 | ()세율로 과세 | | | | | | | | |
| | ├ 1500cc이하 | 10 | 10(10) | | | | | | | | |
| ├ 2000cc이하 | 15 | 15(15) | | | | | | | | | |
| └ 2000cc초과 | 25 | 25(20) | | | | | | | | | |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10 | 10 | | | | | | | | | |
| 5-2-1 | 휘발유 | 1970.1.1 | 1974.1.14 | 1975.1.1 | 1977.7.1 | 1979.3.7 | 1980.8.24 | 1980.11.14 | 1983.3.26 | 1987.6.9 | |
| | ┌ 무연 | 200 | 300 | 300 | 160 | 160(180) | 160 | 160(130) | 100 | 100(85) | |
| | └ 유연 | | | | | | | | | 100 | |
| | | 1989.3.27 | 1991.7.1 | 1992.1.1 | 1994.1.1 | 1994.2.15 | 1994.7.15 | 1995.8.12 | | | |
| 휘발유 | | | | 150 | 150(190) | 150(170) | 150(195) | | | | |
| ┌ 무연 | 100(70) | 100 | 100(109) | | | | | | | | |
| └ 유연 | 100(85) | 100(120) | 100(130) | | | | | | | | |
| 5-2-2 | | 1970.1.1 | 1977.7.1 | 1980.8.24 | 1983.3.26 | 1994.1.1 | 1994.2.15 | 1994.7.15 | 1995.8.12 | | |
| | 경유 | 40 | 10 | 10(7) | 10(9) | 20 | 20(25) | 20 | 20(26) | | |
| 5-2-3 | | 1970.1.1 | 1974.11.1 | 1977.7.1 | 1994.1.1 | 1994.2.15 | 1994.7.15 | | | | |
| | 등유 | 30 | 비과세 | 비과세 | 10 | 10(13) | 10 | | | | |
| 5-2-4 | | 1970.1.1 | 1977.7.1 | 1983.1.1 | 1987.6.9 | 1994.1.1 | | | | | |
| | LPG | 15 | 비과세 | 10 | 10(8) | 10 | | | | | |
| 5-2-5 | | 1977.7.1 | 1994.1.1 | | | | | | | | |
| | LNG | 비과세 | 10 | | | | | | | | |



6. 과세장소 및 유흥장소 세율변천

(단위: %)

| | | | | | | | | |
|------------------|----------|----------|------------|-----------|----------|----------|----------|----------|
| 과 세 장 소 | | 1970.1.1 | 1974.1.14 | 1975.1.1 | 1977.7.1 | | | |
| | 경 마 장 | 20 | 50 | 50 | 50 | | | |
| | | 1970.1.1 | 1972.1.1 | 1974.1.14 | 1975.1.1 | 1977.7.1 | 1995.1.1 | |
| | 터키식탕 | 50 | 100 | 250 | 250 | 100 | 1만원 | |
| | | 1970.1.1 | 1972.1.1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9.1.1 | 1994.1.1 |
| | 투전기시시설장소 | 40 | 100 | 250 | 250 | 500원 | 1천원 | 2천원 |
| | | 1970.1.1 | 1972.1.1 | 1974.1.14 | 1975.1.1 | 1977.7.1 | | |
| | 골 프 장 | 250원 | 1천원 | 3천원 | 3천원 | 3천원 | | |
| | | 1970.1.1 | 1972.1.1 | 1974.1.14 | 1975.1.1 | 1977.7.1 | 1989.1.1 | 1994.1.1 |
| | 카 지 노 | | | | | | | |
| | 내국인 | 1,500원 | 5천원 | 1만5천원 | 1만5천원 | 1만5천원 | 3만원 | 5만원 |
| | 외국인 | 300원 | 300원 | 300원 | 300원 | 300원 | 2천원 | 2천원 |
| | 1970.1.1 | 1977.1.1 | 1982.1.1 | | | | | |
| 스키장 | 비과세 | 비과세 | 10 | | | | | |
| 과세유흥 | | 1970.1.1 | 1974.12.31 | 1977.1.1 | 1977.7.1 | 1982.1.1 | 1994.1.1 | |
| 장 소 | 과세유흥장소 | 3~20 | 3~30 | 4~40 | 비과세 | 10 | 15 | |

